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852호 2023. 3. 15.(수)

www.gongju.go.kr



선 람	기관위원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2544
우)352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조 례】

제1611호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1612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1613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1614호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16
제1615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1616호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1617호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28
제1618호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34
제1619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1620호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	41
제1621호 공주시 마스크트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조례	50
제1622호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59
제1623호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	67
제1624호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70
제1625호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1626호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75
제1627호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77
제1628호 공주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81
제1629호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90
제1630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1631호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97
제1632호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제1633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1634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1635호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1636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1637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제1638호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127

제1639호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30
제1640호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133
제1641호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36
제1642호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1
제1643호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44
제1644호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53
제1645호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57
제1646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159
【규 칙】	
제647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64
【훈 령】	
제315호 공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	166
【공 고】	
제2023-464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185
제2023-513호 2022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191
제2023-557호 공주시 금고지정 신청 공고	222
제2023-5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241
제2023-568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48
제2023-569호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63
【고 시】	
제2023-35호 도로명 부여 고시	270
제2023-37호 유구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276
제2023-41호 신영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277
제2023-44호 도로명주소 고시	279
제2023-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84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한“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위한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위한 「공주시지역치안협의회」”를 “위한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포함한 10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공주시의회 의장
3. 공주경찰서장
4.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5. 공주소방서장
6.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공주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을 “대해 사전 의견수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치안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6. 그 밖에 사회단체 및 주민 대표

제9조 본문 중 “1회”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 중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조례”를 “조례에서 규정한 것”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거쳐”를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중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기증 등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재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이 진입하여 야외 관람객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제8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을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4. 유적 보존과 활용에 대한 사항
5. 국내외 박물관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

제9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 및 구석기역사와”를 “문화재, 선사, 역사시대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박물관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2조의 제목 “(자료의 취득)”을 “(자료의 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2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취득한다”를 “수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박물관 자료는 박물관에서 평가대상을 선정 한 후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자료기증 및 기탁)”을 “(기증 및 기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자료관리 등)”을 “(소장품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소장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수시로 점검한다.
- ③ 시장은 소장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시된 자료 이외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한다.
- ④ 수장고는 박물관 업무 관계자에 한정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경우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상설로 비치된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출입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료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자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21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학예업무 실습과정 운영) ① 시장은 학술, 전시, 유물 관리 등 학예업무에 필요한 실습자를 선발해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습 과정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실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습자는 근무일 중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체험,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및 편의 물품 소매점
2. 문화 체험 실습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마을 기업 등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와 관련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2. 27.)에서 의결된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3년 3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613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주 공산성
2.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3. 공주 석장리유적(박물관)

제4조제1항제1호 중 “설 밧”을 “1월 1일 밧 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 밧 매표시간”을 “공개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17:00

③ 문화재의 입장 밧 매표 시간은 공개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무료관람)”을 “(관람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온누리 공주시민에 가입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 중지, 입장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3. 텐트 설치 및 야영(차박 등)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 규정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재 관람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변경	석장리 유적	관람료	3,000	2,000	1,000	2,500	1,500	500	
	공산성	관람료	3,000	2,000	1,000	2,500	1,500	500	
	무령왕릉과 왕릉원	관람료	3,000	2,000	1,000	2,500	1,500	500	
	통합관람권		6,000	4,000	2,000	5,000	3,000	1,000	

※ 통합관람권은 구입 다음날까지 사용가능, 이용 중 환불 불가

1. 어린이 :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사회복지요원 및 경비
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가진 사람)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3.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비용
4.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상인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 ③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숙박료 등의 감면) ① 휴양마을의 숙박료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휴양마을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숙박료 면제 또는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공주시민에게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 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휴양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마을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외에도 휴양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장은 휴양마을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마을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숙박료(제7조제5항 관련)

시설명	규격	사용 기간	성수기 주말 공휴일	비수기 주중	비고
숲속의 집	64.18m ² (10인실)	1동/1일	195,000원	109,200원	4실
	32.13m ² (6인실)	1동/1일	130,000원	72,800원	10실
산림문화 휴양관	43.00m ² (8인실)	1실/1일	156,000원	91,000원	2실
	30.40m ² (5인실)	1실/1일	104,000원	54,600원	2실
	21.50m ² (4인실)	1실/1일	78,000원	45,500원	2실
야영장	나무데크 시멘트	1면/1일	30,000원	30,000원	20개소

(주1)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 성수기란 7월 15일~8월 24일, 주말이란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

(주2) 비수기 및 주중(평일)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과 그 전일(前日)을 제외한 기간

※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 기준인원 초과 1인당 5,000원을 징수하며, 초과인원은 2인 이하로 제한

(침구류 추가제공 없음)

- 1일(15시 ~ 익일 11시)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숙박료 징수

※ 야영장

- 1일(15시 ~ 익일 11시)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숙박료 징수

※ 위 사항은 예약 후 숙박료를 선납한 경우에 해당되며, 당일 취소는 12시까지 유선 또는 인터넷 취소 요청 등이 없을 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별표 4]

숙박료 감면 기준(제8조의2 관련)

감면 대상	시 설	감면율(%)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4.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숲속의 집	20	20
	산림문화휴양관		

[참고사항]

1. 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주시민은 중복 할인을 적용한다.
2.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한 가정에 1실만 감면한다.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2. 28.)에서 의결된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3년 3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617호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공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직 근로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공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직 근로자를 말한다.
2. “직무수행”이란 공주시에서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수사 또는 기소, 피소된 사건이 종결 또는 확정될 때까지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수임비용

나. 인지대, 감정비용, 증인신청비용, 공증비용 등 그밖의 비용

제3조(지원대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금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직무관련 소송비용은 심급별 55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2,2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소 전 수사 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공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심

급별 55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금 신청) 공무원 등의 소속부서는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서를 소송총괄부서에 공문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금 지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소송비용 지원금을 소송총괄부서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금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감봉 이상 징계를 받아 확정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

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수령한 보상금 또는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지원받은 소송비용 지원금액 이내로 한다.

⑥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소송비용을 수령하지 못해 소송비용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직무관련 부서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 명	직 급
	담당업무	
관련사건	관할기관	
	사건유형	
	사건번호	
	확정일	
지원금액	금	원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첨부 구비서류에 “V” 표시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환수 각서

신청인	성 명	직 급
	소 속	

직무 관련 수사, 기소, 피소에 따른 비용지원에 대한 환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1. 상기 본인은 공주시 공무원으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수사, 기소, 피소되어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며,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즉시 전액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상기 본인은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 ·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무죄판결 또는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금 · 소송비용을 청구할 것이며, 이에 따른 보상금 ·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공주시에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화해 주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적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평등하게 공주시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참여해 소통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과 공주시는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공주시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과 공주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수립·개발과정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에 참여해 소통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정책수립,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정책소통의 목표) 시장은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소통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마련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설정
3. 주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마련

제7조(주민의 정책수립 제안) 주민은 공주시의 주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 공청회 개최 청구) ① 주민은 공주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청회 개최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자치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공청회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했던 공청회와 내용이 동일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70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중요정책에 대한 공청회 청구에 대해 공청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시장은 주민의 생활과 권리에 밀접

한 영향이 있는 중요한 공사, 사업, 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2. 현수막 게시
3.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직접전파
4. 그밖에 주민에게 알리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중 “위원의 회의참석”을 “위원에게 지급하는”으로, “일비·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지급에”를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을 “위원회의 위원에게”로, “수당 등”을 “다음 각 호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2.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지방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명예기자”란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주요 시정시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지역 소식과 여론을 수렴해 공주시에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명예기자의 구성) ① 시장은 공주시 주민의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주시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40명 이내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균형을 위해 읍·면·동별로 명예기자 인원을 분배할 수 있다.

제4조(선발 및 임기) ① 명예기자 선발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필 및 면접평가 등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자격) 명예기자의 자격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예 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신문, 잡지사의 기자였거나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사 작성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
4. 명예기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
5. 월 1회 이상 취재 활동이 가능한 사람
6.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사람
7.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주요 활동 및 의무) ① 명예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및 홍보 모니터링
2.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
3.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의견수렴 및 건의
4. 시정, 관광, 먹거리 등 다양한 지역소식 취재
5. 공주시정 소식지에 기사 투고 활동
6. 지역의 미담과 수범사례, 기고문 작성 등
7.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

② 명예기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사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민명예기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사했을 경우
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경우

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 명예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5. 그 밖의 질병,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기자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여론 등의 청취를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간담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우수기사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명예기자 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민명예기자증) 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명예기자증의 내용·규격·서식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규격에 따른다.

② 시장이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명예기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명예기자의 해촉 시에는 시민명예기자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11조(명예기자 활동수칙) ① 명예기자는 시민을 대표해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명예기자는 직위를 이용해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해 활동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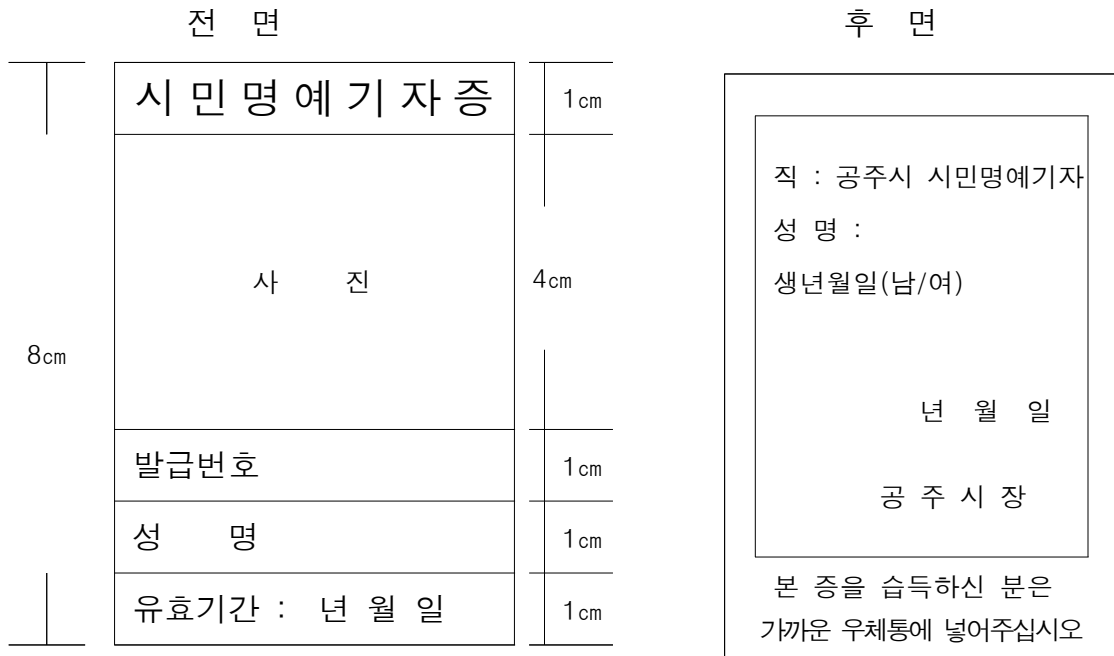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시민명예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민명예기자외”를 삭제한다.

시민명예기자증 규격



- 규 격 : 5.0 X 8.0cm
- 재 질 : 120g / m² 백색 모조지 투명비닐 코팅
- 색상 및 도안 : 공주시 공무원증 전용색상 및 도안 준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시민명예기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년월일	유효기간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반납일	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마스코트의 가치 제고와 사용 및 관리, 판매, 유통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스코트”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의 정책, 관광, 축제 등 활동을 알리기 위해 만든 시의 상징물을 말한다.
2. “마스코트 상품”이란 시가 마스코트를 활용해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3.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4.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시로부터 마스코트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마스코트 관련 사업) ① 시장은 마스코트를 사용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마스코트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마스코트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마스코트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마스코트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스코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스코트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마스코트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스코트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해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마스코트 상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연장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약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마스코트를 변형해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마스코트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마스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마스코트 이미지 상하좌우 1cm 이내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과 공주'외에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마스코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마스코트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장의 사용허가

제8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마스코트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업종 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마스코트 사용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코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상품의 제작 및 판매) ① 시장은 마스코트를 소재로 시 홍보를 위해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② 마스코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작원가, 유통이익, 동종 제품의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적정 가격을 정한다.
2. 판매방법은 직접판매, 직영판매, 위탁판매로 한다.
3. 판매금액의 이익금은 직접판매, 직영판매 시 제작원가의 100분의20 이내로 정하며 위탁판매 시 100분의 30 이내로 산정한다.
4. 공주시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의 경우 시장은 위탁업체에 관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직접 및 직영판매) ① 시장은 상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판매하거나 직영판매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상품 홍보 및 상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직영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직영판매점은 시의 직원이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직영판매점이 위치한 기관의 직원이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판매점 지정 등) ① 시장은 상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판매점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판매목록, 판매가격, 계약기간
2. 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3. 계약변경, 해제 및 명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판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2. 위탁판매점 운영의 중단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3.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

제14조(판매 자격 및 조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판매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주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로 마스코트 홍보 목적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주시 외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로 시의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
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상품교환) ① 위탁판매점은 공급받은 상품의 파·훼손 등 사유로
시에 상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환요구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파손되었거나 잃어버린 경우
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판매점과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6조(상품의 보관·관리) ① 직영판매점은 상품의 관리를 위해 매월
관리대장에 수불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② 직영판매점은 상품의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해 분기별 1회 재고조
사를 실시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시에 보고해야 한다.

③ 재고조사는 직영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시와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는 보관·전시·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 등으로 인해 상품으로
써의 가치를 잃어버린 상품은 폐기할 수 있다.

⑤ 상품의 폐기에 대해서는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판매이익금 처리)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판매이익금은 공
주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징물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정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학업성취도가 직전 학기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
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추천) 읍·면·동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문고분회 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5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 공주시 새마을회장과 함께 다음 순위를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를 충청남도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선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선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공주시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의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공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

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시장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및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신청서

1. 새마을지도자 인적 사항

- 주 소 :
- 성 명 : (남 /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지도자 경력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연수 : 년 월)

2. 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과 학년)
- 성 명 :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 장학생 구분 : 유공자 · 우등생 · 특기생
- 타기관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수혜여부 : 장학금(), 학비 보조금()

3. 가족 사항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연 령	직 업	비 고

4. 재산상황

부 동 산	동 산	연 수 입	그 밖 에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20 학년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관련 증명서류(새마을 경력, 유공증명서, 성적증명서, 특기관련 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새마을회장

공주시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1. 소 속 : 학교 학과 학년
2. 성 명 : (한글) (한자) (남 / 여)
3. 생년월일 :
4. 주 소 :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20 학년도 새마을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인)

○○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 (인)

○○ 읍·면·동 새마을문고분회장 (인)

○○ 읍·면·동장 (인)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새마을회장

서 약 서

1. 소 속 : 학교 학과 학년
2. 성 명 : (한글) (한자) (남 / 여)
3. 생년월일 :
4. 주 소 :

본인은 새마을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학업에 충실할 것이며 본 장학금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장 학 생 (인)

보 호 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새마을회장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공주시 안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를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체육복, 생활복 등을 포함한다)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학교급식비”란 「학교급식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1.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
2. 교복구입비
3. 학교급식비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주시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시장은 매년 제3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후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액) ① 지원금액은 재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낮추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의 효과를 확대해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공주시에 소재한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종교시설 등

나. 그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정하기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시설 등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

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3. 학생 급식지원
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주시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국가 무형문화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활동 및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② 제1항 지정 및 해제는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제12조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규 발생 무형문화재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
4. 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
5.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9조(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4. 전승회원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등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 교육, 연구 및 조사 활동, 공연 활동, 홍보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준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조 및 지원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2. 27.)에서 의결된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3년 3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628호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
2. 지정·변경·해제일시
3.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7.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營農)행위 또는 영어(營漁) 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

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 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풀·선나무·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풀·선나무·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가축의 방목

8.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9.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조사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호

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5.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6.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7.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출입제한·금지사유·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4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입장소			
출입목적			
출입기간			
보호구역명칭			
<p>「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공주시장 귀하</p>			
붙임서류 :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 1부			수수료
			없음

----- 절 ----- 취 ----- 선 -----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필증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입장소			
출입목적			
출입기간			
<p>「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출입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공 주 시 장</p>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2. 27.)에서 의결된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3년 3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629호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3.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
3.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용
2.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용
3.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운영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지원 통보를 받은 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7조제3항 중 “있으며 「자원순환법」 제5조에 의거”를 “있으며”로, “필요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현수막, 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재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단, 폐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한정한다.
2. 지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에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제4항 중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 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하고 공공용봉투”를 “지정하고 공공용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 나. 공주시의회
 - 다.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사용 저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우수업소(이하 "환경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 우수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 환경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공주시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홍보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환경 우수업소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2. 27.)에서 의결된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3년 3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632호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를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유재산의 임대) ①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8조의3(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①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본문 중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을 “수당·여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제23조의 제목“(토지의 분할제한면적 등)”을“(토지의 분할제한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인”을 “인가·허”로, “분할제한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의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것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20퍼센트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4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둔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3호관련)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제10호(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제4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제30조제1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30조제1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식품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제30조제1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4호의 제1종, 제2종의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의 부대 시설로 건축하는 경우와 4층 이하의 생활숙박시설로서 **【별표 24】**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같은 호 마목 및 자목만 해당한다)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및 제30조제2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9.8.2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 및 제30조제2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2. 27.)에서 의결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3년 3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634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영 제42조에 따른 미반환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거된 광고물 중 폐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2. 27.)에서 의결된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3년 3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635호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2. 27.)에서 의결된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3년 3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636호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를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교통업무 담당국장, 건설·도시·교통·재난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2. 공주소방서 관련 담당과장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제1항 중 “업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본문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을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의 너비를 확장하여 확보하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공주시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① 시장은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3. 가족 체류 프로그램
4. 농촌유학 활동가 등 관계자 교육
5. 농촌유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공주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태계 보전과 유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소비촉진 방안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3.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4.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5. 양봉 관련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사업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
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예산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시가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장려 정책)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및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주시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 현판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청 시 우선권 부여 및 무료교육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배터리, 패드 등) 교체 비용의 50퍼센트 지원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공주시의회”를 “공주시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시의회””를 “이하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해야 한다.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시의회”를 각각 “의회”로 한다.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재하여 사용”을 “기재해 사용”으로,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

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의회”를 “의회”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회는”을 “의회는”으로,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시의회”를 “의회”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시의회 의장”을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안의 자문
2. 입법정책에 대한 자문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입법절차에 대한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한 법률 관련사항 검토

③ 입법고문·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된다.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고문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촉일 기준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고문은 공주시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입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제7조(자문사실 통지 등) ① 의원이 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의회의 각 전문위원, 각 팀장 등이 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고문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자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관계에 대한 검토나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해 10만원(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하거나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에 대한 협의

제10조(소송수임료의 지급) 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공통경비는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소송대리인은 제소사건에서 해당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11조(자문기록부 관리)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의뢰한 자문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에 월별로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송수임료 지급기준(제10조 관련)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해당없음	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정·감정비: 실비 4. 증인신청비: 실비 5. 문서송부촉탁 수수료 등: 실비 5. 그 밖의 실비
	가.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		
	나.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2천만원 미만	1,300,000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800,000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00,000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500,000		
	마. 중요 사건	6,000,000		
	3. 환송심	원심의		
가. 재항소심	1/2			
나. 재상고심	항소심의 1/2 상고심의 1/2			
헌법 재판 소 관할 심판	1. 일반사건	2,000,000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않음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건	6,000,0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승낙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인)

공 주 시 의 회 의 장 귀하

위 축 장

직위

성명

귀하를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문기록부

구 분	의뢰인 (의뢰일)	건 명	자문내용	고문성명	회신일	회신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 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주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주시장, 공주시 부시장
2. 공주시 본청의 실·국장, 과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
4. 공주시 읍·면·동장
5.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공주시 관계공무원

제3조(정례회 집회일)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 심의 대상안건 등) ① 제3조에 따라 집회된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

가. 결산안 승인

나. 행정사무감사

다.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가. 예산안 승인

나.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다음연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임시회 소집 등) ① 법 제54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연간 회의 총일수) 법 제56조에 따른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해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회기) ① 법 제56조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합해서 5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례회 일수를 초과해 집회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시민자치국, 문화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다목, 라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나목, 다목 중 “속하는”을 각각 “관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위원”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만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의사”를 “운영, 의사”로,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3조”로, “행하는”을 “실시하는”으로,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 제1차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감사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를 “본회의”로, “행한다”를 “매년 제1차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감사위원회”를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작성하며 감사일정, 감사위원회”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검토한 다음”을 “검토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회의장”을 “공주시의회 의장”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주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재적의원 3분의1”을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로,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를 “행정사무조사(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발의”를 “발의”로,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를 “조사를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를 “때 제2항의 발의가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 회”를 “본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검토한 다음,”을 “검토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즉시”를 “지체없이”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시”를 “공주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17조제2항”을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법 제117조제2항”으로,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법인”을 “법인(다만,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해 실시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의”를 “조사”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그”를 “해당”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실시한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공주시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충청남도의 사무
3. 국가의 사무중 국회나 충청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제7조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8조 중 “아니된다”를 “안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 또는 공주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답하여야 하며, 본회의·감사”를 “본회의·감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기테이 프·자기디스크”를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일·통지 및 보고·서류의 제출·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과태료부과)”를 “(과태료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를 “결정해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한다.

①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제23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따르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의 제목 “(무료관람)”을 “(관람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인솔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5. 공주시와 상생발전 협력 또는 협약을 맺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다만, 상생협력 관련 조항에 공주시 주민에게 유적지 및 시설 이용 무료 또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 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주시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근로자 중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 따른 각종 수칙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소관 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각 부서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부서장 또는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

②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는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산업보건역)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역을 위촉하거나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산업보건역은 위촉이나 선임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보건과의 직무는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구성·위촉한다.

1. 근로자위원

가.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또는 팀장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필요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맡도록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활동보장) ①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근로자측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7조의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안전 논의 등 위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 등을 구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비공개로 의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 등을 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5조(직무) 위원회는 시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2.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3. 간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안전상정 및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제16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 위원장은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1.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개최한다.
2. 중대재해 발생시
3. 위원장 및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청 시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및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결과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교육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조언을 얻어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21조(정기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비 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다.

제22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② 관리책임자는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23조(특별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다.

③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다.

제25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정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기록·보존) ① 시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방법 및 내용
3. 교육실시자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관리

제27조(안전·보건관리계획)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 재해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9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모든 근로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 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 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는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법 제93조제1항 및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근로자의 작업상태나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별표 2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지휘하고 방호장치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작업환경

을 측정하는 등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작업지휘자의 배치) ① 시장은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안전수칙 및 안전표지)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 및 안전표시를 작성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

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시행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시장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결과와 조치사항 등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37조(위험물질의 보관) ① 시장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8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작업환경측정) ① 시장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0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이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서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규칙 별표 2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상황과 점검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그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는 취급하는 대상물질에 대한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되는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③ 시장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근골격계질환예방) 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직무스트레스)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안전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수립

제47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고조사는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검토는 재해발생과정 확인, 재해요인의 파악, 재해요인의 결정, 대책수립 순으로 실시한다.

③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 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제7장 보칙

제50조(무재해운동)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다.

제51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서류는 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 회의록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공고 제2023-464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소하천 명	사업 개요									비 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개소)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 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송산천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송선동 423-5	송선동 190-2	L=1.2km			소교량 2개소 등	2024. 1.	2025. 12.	하천 정비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1. 소하천 정비사업 명칭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나. 공사의 개요

- 사업량 : 하천정비 L=1.2km, 소교량 2개소 등
- 총사업비 : 4,767백만원
- 공사위치 : 공주시 송선동 196번지 ~ 642-1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예정)

3. 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충청남도 공주시장(건설과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공사착공 및 준공 예정일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24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6. 실시설계도서 : 공주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 열람가능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공주시장(건설과장)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위치도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월별 공종별	비율 (%)	공사기간												비고	
		2 개월	4 개월	6 개월	8 개월	10 개월	12 개월	14 개월	16 개월	18 개월	20 개월	22 개월	24 개월		
축제공	50.04														
호안공	32.37														
구조 물공	1.09														
교량재 가설공	2.79														
포장공	6.59														
공통 부대공	7.12														
누계	100	5	15	25	35	45	55	65	75	85	90	95	100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사업명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비고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4,767	1,645	1,000	2,122	

12.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23년 2월 이후 ~
- 보상절차 및 방법 :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후 지급
- 보상가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13. 기타사항

- 위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건설과(☎041-840-8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토 지 조 서

□ 공사명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소 유 구 분	지 적 (㎡)	편 입 (㎡)	소 유 자		관 계 인	
	시	동,리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공주시	송선동	423	답	사	6,678	392	공주시 송선동 205	전주*씨*군구대 손*영공파종중		
2	공주시	송선동	642-4	답	사	879	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883-6	정*영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4-8	의당농업협 동조합
3	공주시	송선동	642-5	대	사	226	63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462	강*조		
4	공주시	송선동	642-6	대	사	796	71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642-6	송선*구마을회		
5	공주시	송선동	191-1	답	사	2,021	2,02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178-1	김*원		
6	공주시	송선동	191	답	사	684	2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106동 1601호	이*주	공주시 금성길 19(금성동)	공주농업협 동조합
7	공주시	송선동	190-2	천	사	2,284	1,960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204	전주*씨*군파금 동종중회		
8	공주시	송선동	138-3	천	사	158	158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393-13	윤*림		
9	공주시	송선동	138-2	답	사	168	93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467	박*석		
10	공주시	송선동	138-1	천	사	242	242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393-13	윤*림		
11	공주시	송선동	130	대	사	660	3	공주시 옥룡동 202-7	김*필		
12	공주시	송선동	130-5	전	사	625	28	공주시 옥룡동 202-7	김*필		
13	공주시	송선동	129	전	사	5,381	487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75-2 한아름아파트 1402	이*구		
14	공주시	송선동	129-1	답	사	3,901	237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5 금강빌라 3-102	신*균		
15	공주시	송선동	192	답	사	2,116	18	공주시 방머리2길 6-5(송선동)	이*주	공주시 대통1길 69-1(반죽동)	공주신용협 동조합
16	공주시	송선동	196	천	사	1,029	743	전라북도 금산군 진산면 수정리	김*근		
17	공주시	송선동	193-1	천	사	510	74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204	전주*씨*군파금 동종중회		
18	공주시	송선동	138-4	답	사	1,234	143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467	박*석		
19	공주시	송선동	642-16	답	사	434	52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467	박*석		
20	공주시	송선동	642-1 8	답	사	417	90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467	박*석		

지 장 물 조 서

□ 공사명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연번	물건의 소재지			지 장 물 명	단 위	수 량	소 유 권 자		비 고
	시·군	리·동	지 번				성 명	주 소	
1	공주시	송선동	642-1	느티나무	그루	2			
2	공주시	송선동	642-13	밤나무	그루	2			
				뽕나무	그루	3			
3	공주시	송선동	428-6	감나무	그루	4			
4	공주시	송선동	428-3	대추나무	그루	30			
5	공주시	송선동	642-1	밤나무	그루	1			
6	공주시	송선동	642-10	표지판	개소	1	㈜밤*을	충남 공주시 큰말1길 88	
				밤나무	그루	1			
7	공주시	송선동	642-10	밤나무	그루	10			
8	공주시	송선동	642-11	밤나무	그루	12			
9	공주시	송선동	642-10	밤나무	그루	3			
10	공주시	송선동	642-11	밤나무	그루	10			
11	공주시	송선동	642-10	느티나무	그루	1			
12	공주시	송선동	145	뽕나무	그루	1			
13	공주시	송선동	642-10	뽕나무	그루	4			
14	공주시	송선동	145	뽕나무	그루	2			
15	공주시	송선동	642-154	밤나무	그루	1	송선*구마*회		
				느티나무	그루	7			
16	공주시	송선동	642-17	소나무	그루	3	송선*구마*회		
17	공주시	송선동	642-17	밤나무	그루	4	김*필	공주시 옥룡동 202-7	
18	공주시	송선동	642-154	운동기구	개소	5	송선*구마*회관		
				헬스	m	40			
20	공주시	송선동	642-154	소나무	그루	3	송선*구마*회		
				조경수	그루	2			
21	공주시	송선동	642-154	소나무	그루	1	송선*구마*회		
				조경수	그루	1			
22	공주시	송선동	642-154	확성기	개소	1	송선*구마*회		
				조경수	그루	2			
23	공주시	송선동	642-154	사철나무	m ²	6	정*모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장수길 6	
24	공주시	송선동	642-139	표지판	개소	1	송선 부*산		
25	공주시	송선동	196-1	소나무	개소	2			
26	공주시	송선동	196-1	소나무	개소	6			
27	공주시	송선동	196-1	소나무	개소	2			

2022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3. 3. 15.

공 주 시 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22년도에는 재난이 3회 발생하여 피해는 1,159건 3,083백만원이며, 복구는 1,112건 8,86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풍수해 재난은 3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3,083백만원이며 복구는 8,866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재해복구는 현재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은 완료하였고, 공공시설 복구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 재난발생현황은 풍수해 재난이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였고, 호우 재난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과 21명으로 5년 평균보다 1명 감소하였고, 지난해 보다 1명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7종으로 143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보다 30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1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773백만원으로 773백만원 확보되어 100 %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652백만원 보다 121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5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814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00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37백만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C등급으로 중간이며, 21년도 지역안전도 진단 미실시로 진단결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공주시의 재난관리 역량은 재난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재난관리기금 등은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내진보강 등은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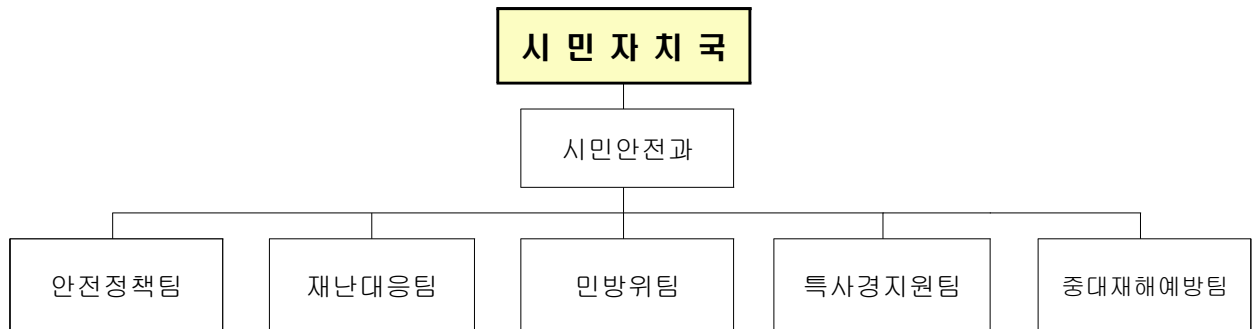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8.8.~17.	호우	-공공시설: 하천, 도로 등 -사유시설: 주택침수, 농작물 등	-공공시설: 하천 도로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공공시설 / 진행중 -사유시설 / 완료
9.3~7.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산림작물, 농작물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사유시설 / 완료
12.17.~24.	대설	-사유시설: 비닐하우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사유시설 / 완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2	22	-	1	5	6	5	5	
	현원	21	21	-	1	6	6	2	6	
시민 안전과	정원	22	22	-	1	5	6	5	5	
	현원	21	21	-	1	6	6	2	6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4	4	-	-	-	1	-	3
	현원	5	5	-	-	-	1	-	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29	20	19	20	21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1	2	1	4	5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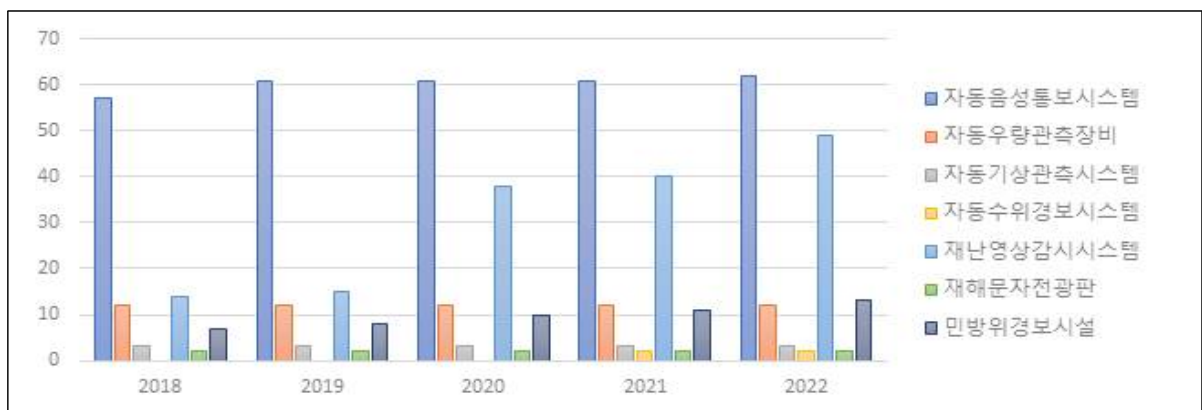
-2022년 방재안전직 신규채용 1명

②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62	유구읍 외 15개 읍·면·동
자동우량관측장비	12	시청, 유구읍 외 10개 읍·면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3	유구읍, 정안면, 금흥동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4	사곡면, 이인면, 계룡면, 신관동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49	공주시 금성동 204 등
재해문자전광판	2	계룡산, 신관금강공원둔치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3	유구읍, 시청별관(교동), 옥룡동 정수장, 축협(신관동), 금학동, 월송동, 정안면, 계룡면, 신평면, 의당면 의용소방대, 탄천면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7	61	61	61	62
자동우량관측장비	12	12	12	12	12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3	3	3	3	3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0	0	0	2	2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4	15	38	40	49
재해문자전광판	2	2	2	2	2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7	8	10	11	13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당) 설치
- 수위 조기경보시스템(용성지구, 중산지구) 설치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5.23~5.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6.8 ~ 6.10	"	1	
재해영향평가과정	6.22~6.24	"	1	
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과정	7.11~7.12	"	1	
재해영향평가과정	8.31~9.2	"	1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9.26~9.28	"	2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10.24~10.26	"	3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11.14~11.16	"	1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12.6~12.8	"	3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2022년 자율 방재단 안전교육	22.11.19.	둔치공원 신관동 553	400	○ 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자율방재단 임무부여 ○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인한 비상상황 대처능력 향상	공주시, 공주시 지역자율 방재단	
2022년 지역 자율방재단 직무교육	22.11.30.	대전 KT 인재개발원	2	○ 겨울철 자율방재단 활동, 응급처치 교육 등 직무교육 ○ 우수활동 사례 전파공유 하여 자율방재단의 현장 활동 능력 강화를 추진	행정안전부,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	
드론의 이해 및 항공 촬영	22.12.16. ~ 18.	대한상공 회의소 충남인력 개발원	1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드론 운영 기술을 습득 ○ 드론의 비행 이론, 관련 법률 및 활용사례를 학습 하고 실제 비행 및 촬영· 편집 기술 습득	행정안전부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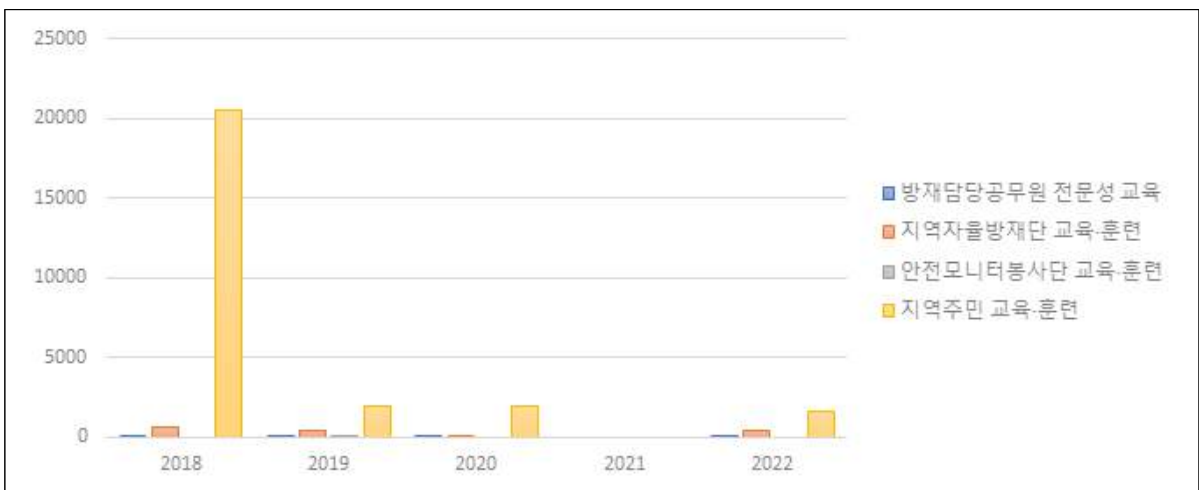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해	당	없	음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안전교육	2022.9. ~12.	안 전 체 험공원	1,584	○ 교통안전영상 상영 ○ 교통안전 교육	(사)세종충남 어머니 안전 지도자회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6	6	22	-	13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573	408	21	-	431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훈련(인원)	-	19	-	-	-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20,467	1,962	1,981	-	1,584



☞ 구체적 내용설명(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 안전체험공원 개관으로 지역주민 교육 증가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 제보·처리 실적 현황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고
		완료	진행	불가	
해	당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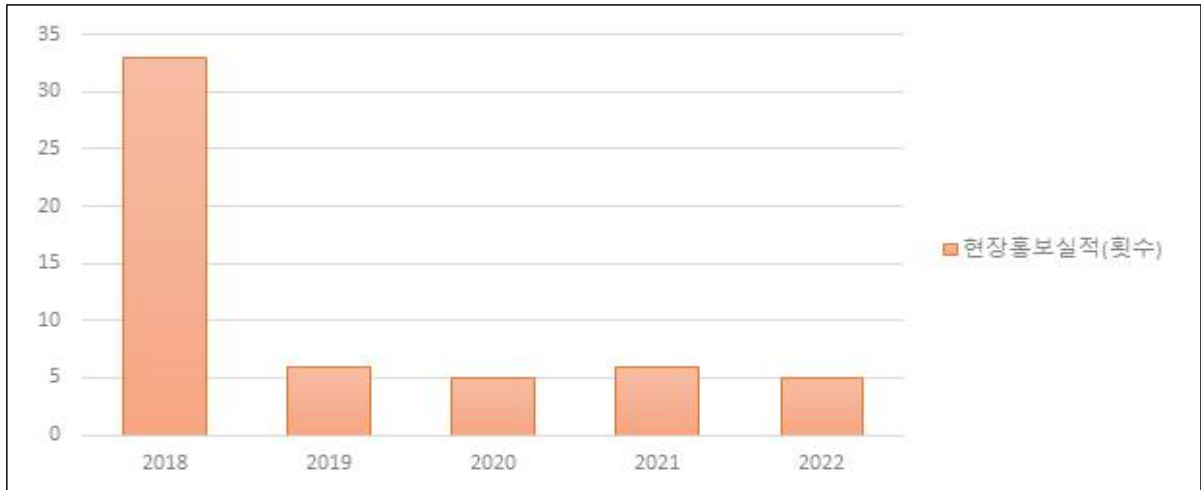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한 설명절보내기 안전문화캠페인	-주제: '잠시멈춤'으로 방역하고 점검하자 -코로나 단계적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설명절 화재, 전기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 안내	22.1.26.	산성 시장	45명	
2	안전한 추석명절보내기 안전문화캠페인	-명절연휴 대비 가스, 전기 확인 등 자가 점검 유도하여 안전사고 예방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진흥 기여	22.9.8.	산성 시장	25명	
3	집중안전점검 캠페인	-집중안전점검과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여 안전의식 강화	22.10.4	신관동	30명	
4	자살예방생명 지킴이안전문화 캠페인	-금강철교 SOS생명지킴이전화 개통식과 안전문화캠페인 동시 추진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캠페인 참여자 및 시민들 모두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 하는 계기 마련	22.11.4	금강 철교	29명	
5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문화 캠페인	-겨울철 화재안전 합동점검 및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 동시추진으로 홍보 극대화 -난방 전열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재확인	22.12.20 ~21.	월송동 및 정안면	20명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장홍보실적(횟수)	33	6	5	6	5



☞ 구체적 내용설명

- 해당사항 없음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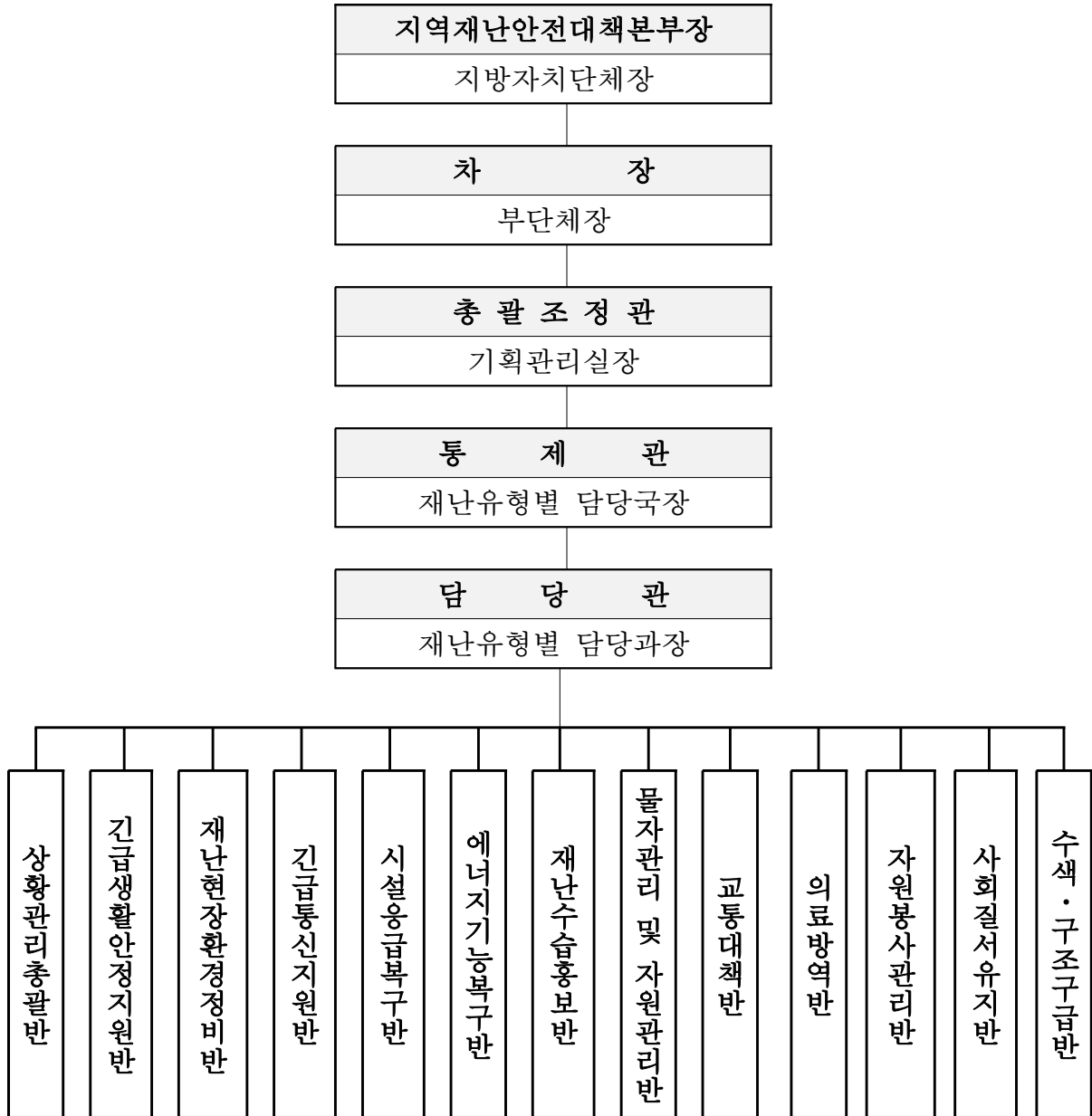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시장 • 위원 : 2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 : 시장 • 차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국장 • 대변인 • 통제관 •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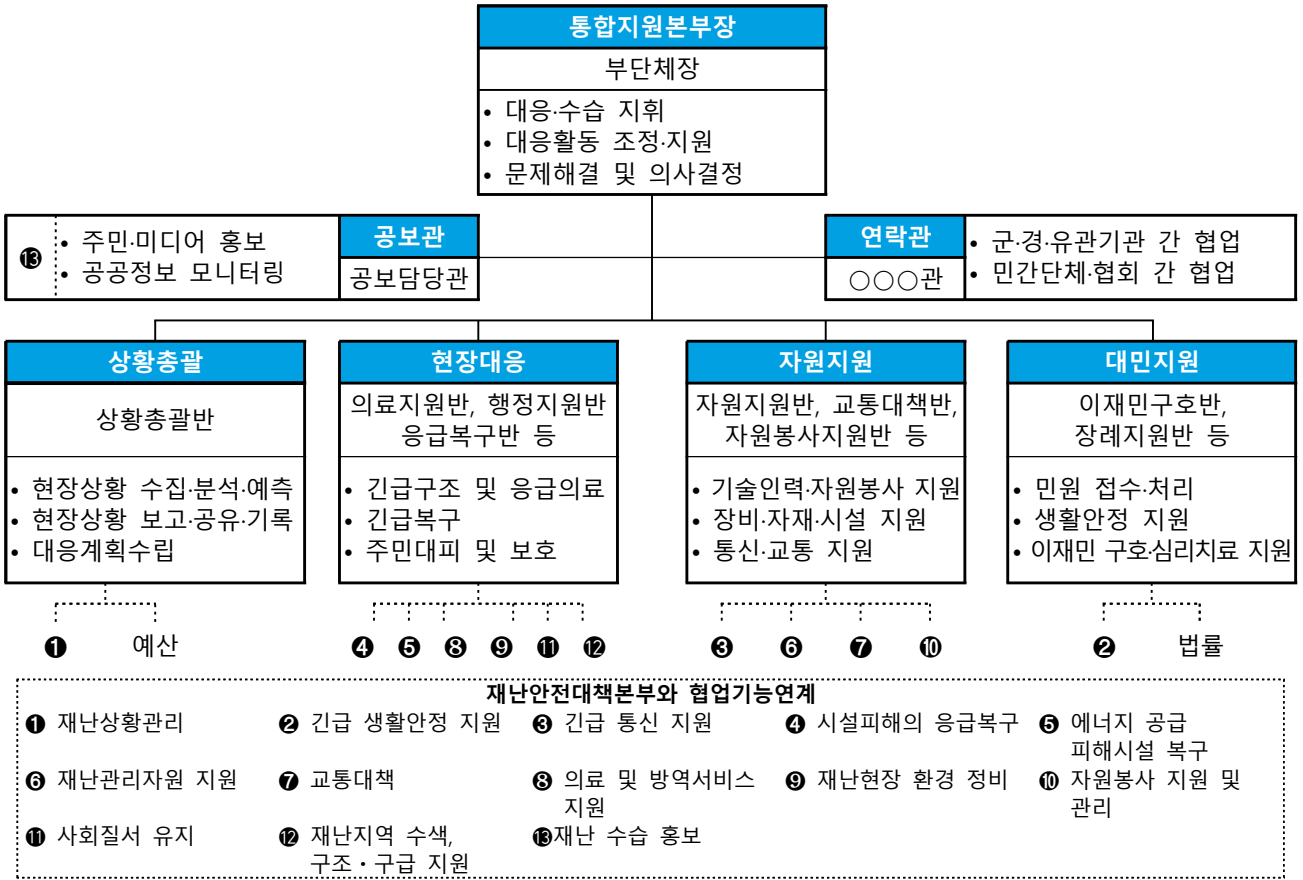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시민안전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시민안전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보호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감사정보담당관)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설과)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경제과)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시민소통담당관)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 상태 유지(시민안전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정책과,감염병관리과)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복지정책과)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행정지원과)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시민안전과)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방 법	비고
공주 소방서	- 화재진압,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 등 - 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 원인, 피해조사 등 기타 자료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공주 경찰서	- 교통 두절·통제 및 해제현황 - 차량 안전지대 대피 및 자동차 운행자제 계도 - 재난지역 경비 및 방법 - 기타 자료 등 요구 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제3585부대 3대대	- 인명구조, 실종자 등 수색 현황 - 주민대피·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질서유지 지원 - 지원 인력·장비 등 응급복구 대민지원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공주 교육지원청	- 학교시설 피해파악 및 이재민수용시설 지원 - 학교 휴교조치, 학생들의 응급복구 지원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KT 공주지점	- 통신두절 및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응급복구 등을 위한 통신지원 - 통신관련 대민지원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한전 공주지사	- 임시전력공급 및 전력시설 응급복구 - 전기료 감면 및 전기용품 수리지원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금강홍수 통제소	- 홍수예보 - 홍수조절을 위한 댐 수문 방류 승인 - 수위·강우량 자료 제공	기술지원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 공원사무소	- 산간, 계곡, 유원지 등 탐방객의 출입통제 - 등산객, 대피소 인원 등 강제 하산 조치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 고속도로 두절·통제 해소 - 기타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한국농어촌 공사 공주지사	- 농작물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장 가동 및 저수지 사전방류 -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사전점검 - 수리시설, 농경지 피해 및 복구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 고속도로 두절·통제 해소 - 교통취약구간 제설장비 확충 -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한국전기 안전공사 충남남부지사	-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점검 - 전기설비 긴급 복구 지원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18.12.07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18.04.24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재난 예·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14.12.26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15.06.26	
공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11.11.15	
공주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자연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013.11.01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16.11.01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공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17.04.17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2020.11.02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	당	없	음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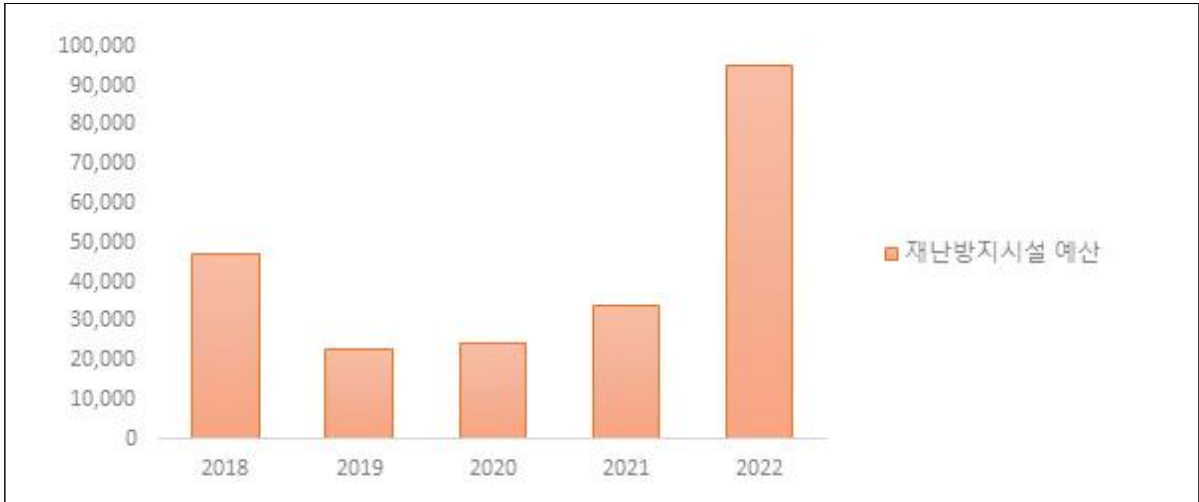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사방시설 점검용역	관내 사방시설	오관정검 4개소 정밀정검 1개소	2022	11	사방시설 점검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인면 이곡리 ~ 탄천면 대학리	하천정비 L=3.44km	2020 ~ 2023	19,103	지방하천 재해예방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학동	하천정비 L=1.8km	2021 ~ 2024	20,687	지방하천 재해예방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의당면 청룡리 ~ 유계리	하천정비 L=3.2km	2021 ~ 2026	26,202	지방하천 재해예방
가락골 소하천 정비사업	정안면 대산리	하천정비 L=2.02km	2021 ~ 2023	4,638	소 하 천 재해예방
탑곡 소하천 정비사업	유구읍 탑곡리	하천정비 L=3.56km	2020 ~ 2023	10,918	소 하 천 재해예방
반포면 마암1리 취입보 정비공사	반포면 마암리	취입보 2개소 정비	2022 ~ 2023	9	재해예방 편익증진
의당면 수촌리 간이양수시설 설치사업	의당면 수촌리	간이양수시설 설치 1식	2023	300	재해예방 편익증진
사곡면 운암리 간이양수시설 설치사업	사곡면 운암리	간이양수시설 설치 1식	2023	136	재해예방 편익증진
상왕동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상왕동	간이양수장 설치 1식	2023	700	재해예방 편익증진
밑머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계룡면 월가리	저수지정비 1식	2023 ~ 2024	1,000	저수지 재해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유구읍 일원	굴착보수 L=882m, 비굴착보수 L=2,849m	2020 ~ 2022	2,620	도로 및 지반 침하 발생 안전사고 예방
이인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이인면 이인리 일원	처리시설 155톤/일, 오수관로 L=5.08km, 배수설비 358가구	2021 ~ 2023	8,719	시설 개선을 통한 수질 사고 예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47,200	22,597	24,209	33,864	95,043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예산 증가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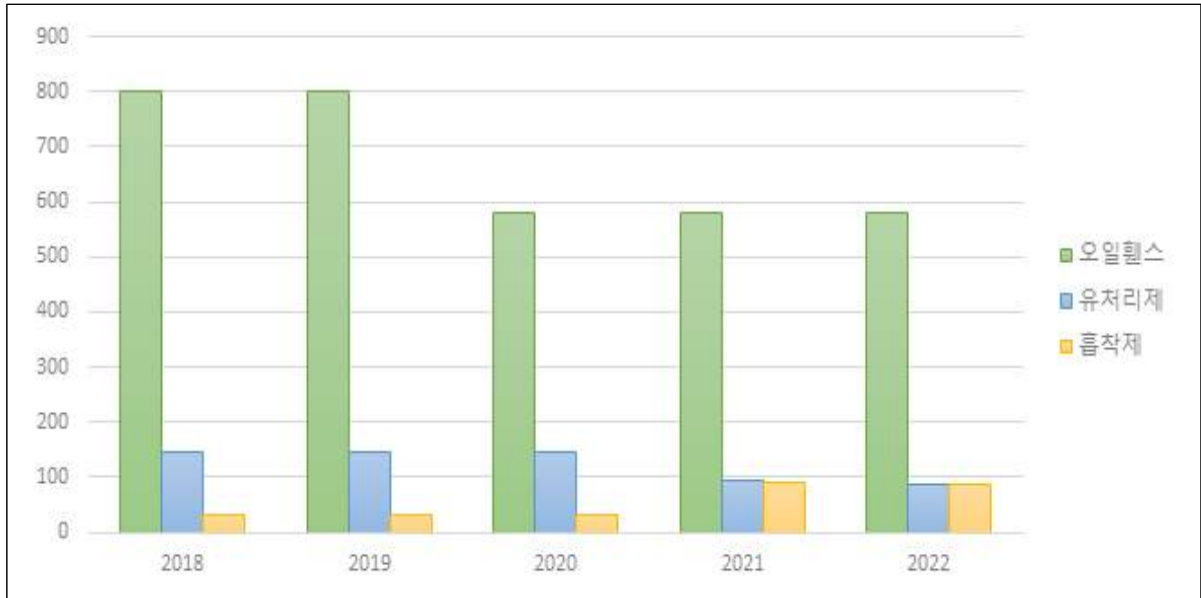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웁스	유흡착제	흡착롤	흡착붕	유처리제	보호장갑
		m	box	box	box	kl	켈레
총계	786	580	17	31	38	85	15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오일웁스	800	800	580	580	580
유처리제	144	144	144	95	85
흡착제	32	32	30	91	86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흡착제의 필요성 및 유처리제 등 사용으로 보유량 변동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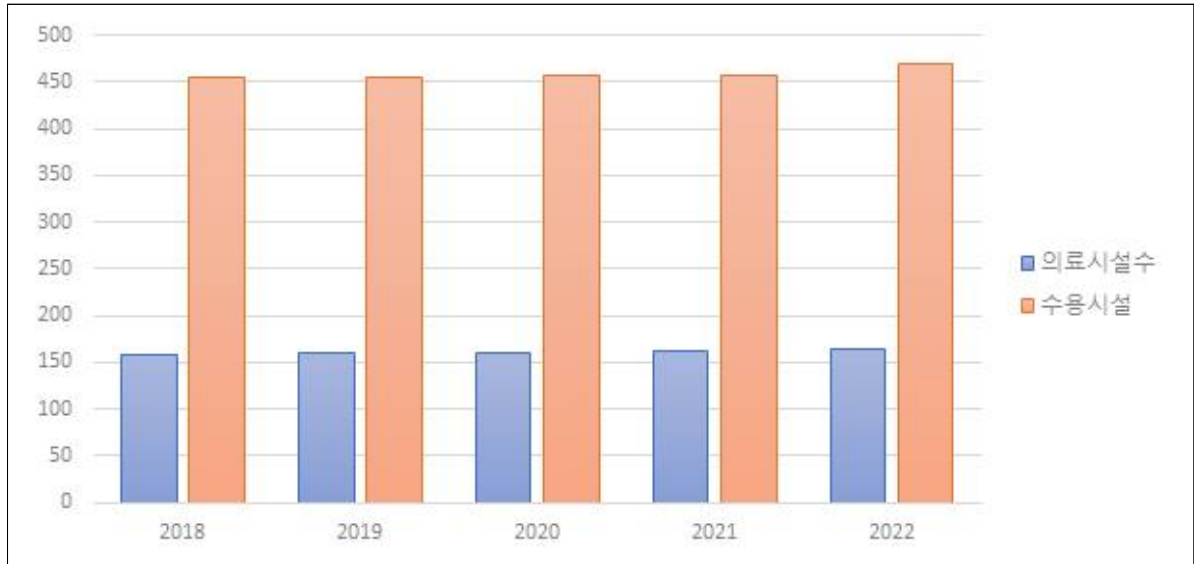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168	213	535	27	3662	1
병원	167	189	477	13	3662	1
보건소	1	24	58	2	0	0
기타	0	0	-	12(소방서)	-	-

[수용시설]

구분	합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기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469	24,840	30	9,429	6	217	431	13,608	2	1,586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료시설수	157	159	160	162	165	
수용시설	개소	455	455	456	456	469
	수용인원	20,424	20,424	20,474	20,474	24,840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경로당 증가로 인한 수용시설 및 수용인원 증가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총계	3	1	1	1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덤프
총계	8	1	3	4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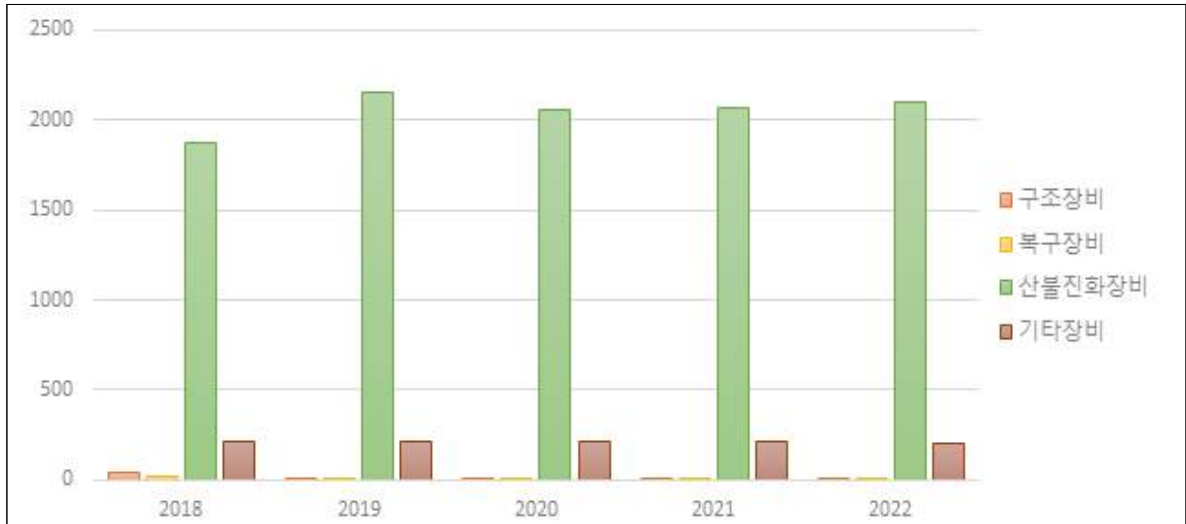
구분	계	헬기 임차	산불 진화차	동력 펌프	갈퀴	무전 기단말기	등짐 펌프	기타
총계	2,096	3	18	3	912	229	597	334

[기타장비]

구분	계	양수기	발전기
총계	204	203	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구조장비	39	1	3	3	3
복구장비	16	8	8	8	8
산불진화장비	1,873	2,151	2,053	2,063	2,096
기타장비	212	212	212	212	204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소모성 장비의 소진 및 구입에 따른 증감

다. 인력 지정

[기술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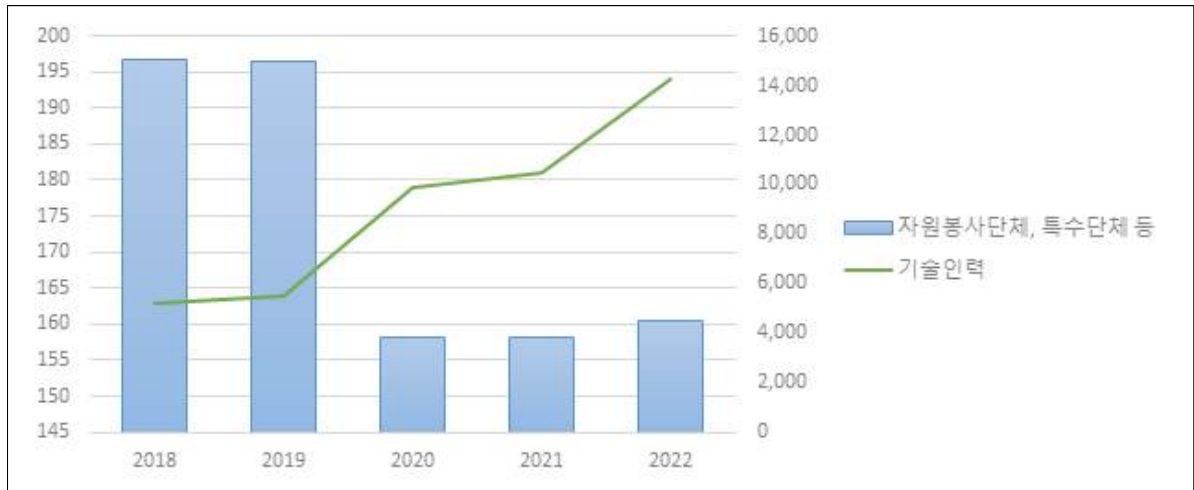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계
인원	194	80	35	26	16	-	7	5	25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인명 구조대	산악 구조대	자율 방재단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회 (지도자)	해병 전우회	여성단체 협의회
인원	4,524	606	54	48	457	365	859	78	2,057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술인력	163	164	179	181	194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15,060	14,994	3,846	3,846	4,524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특이사항 없음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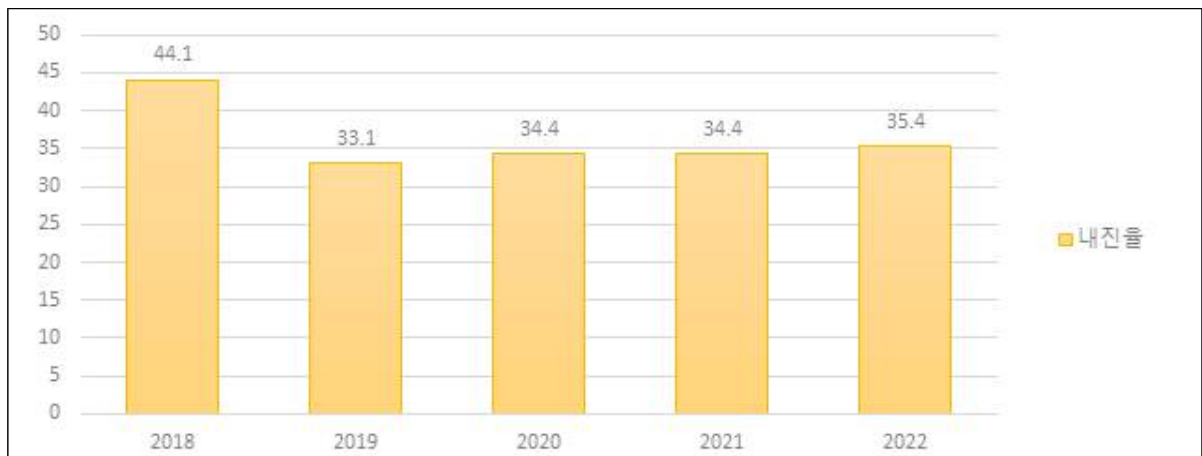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하천분야 업무 추진실태 평가	22.11.2. ~ 8.	공주시 / 충남도(하천과)	보통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22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계	161	57	2	40	35.4
공공건축물	49	21	2	40	42.9
도로시설물	92	26	0	0	28.3
수도시설	14	6	0	0	42.9
공공하수처리시설	6	4	0	0	66.7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내진율	44.1	33.1	34.4	34.4	35.4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 원인 등)

-내진성능평가 2개소 완료(종합사회복지관, 응진동주민센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집행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773백만원	773백만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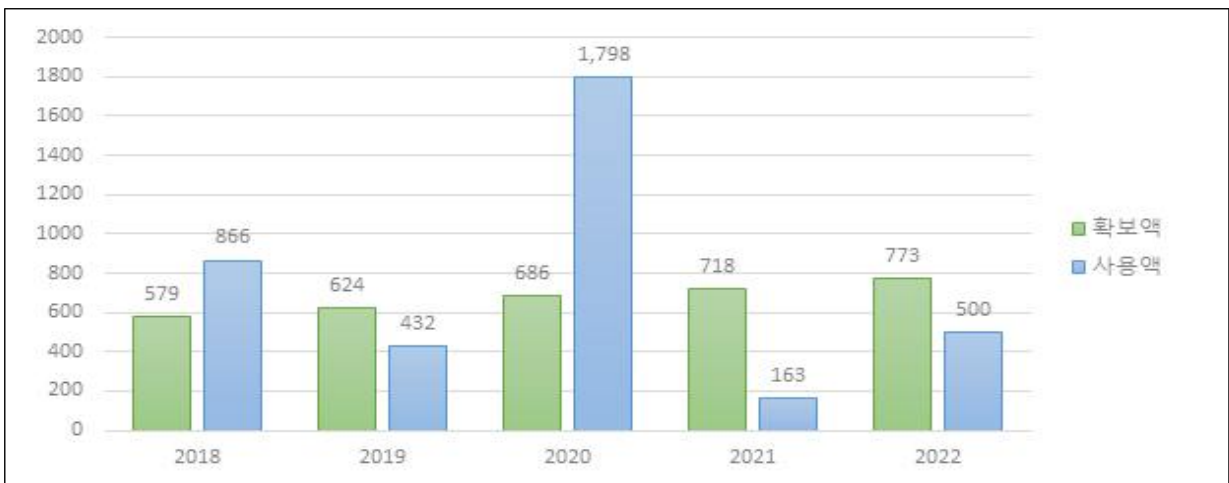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9,542백만원	10,136백만원	106%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확보액(당해연도)		579	624	686	718	773
사 용 액	합 계	866	432	1,798	163	500
	공공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106	2	-	2	1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760	407	1,731	161	489
	민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	67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	23	-	-	-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코로나-19 관련 나래원 화장터 지원으로 사용액 증가

◇ 민간분야에 기금을 활용한 사업별 내역(당해 연도에 한함)

- 해당없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 수 해	시민안전과	2015	풍수해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지 진	시민안전과	2014	지진재난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대형화산폭발	시민안전과	2014	화산폭발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 시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 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 절차를 규정
가 물	시민안전과	2015	가뭄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조류대발생 (녹조)	환경보호과	2019	조류대발생(녹조)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산 사 태	산림공원과	2015	산사태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낙 회	시민안전과	2019	낙회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대응 절차 및 행동 조치사항 규정
한 파	시민안전과	2019	한파 재난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대응 절차 및 행동조치사항을 규정
폭 염	시민안전과	2019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무·역할·조치사항을 규정
산 불	산림공원과	2014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불 상황 단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임무·역할·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보호과	2014	화학 유해물질 유출 사고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유출 사고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 및 조치 사항 등을 규정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보호과	2014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댐 붕 괴	시민안전과	2014	대규모 홍수 및 지진발생 등으로 대형댐이 붕괴 되었을 때 관련기관의 임무·역할·조치사항 등을 규정
고속철도 대형사고	교통과	2015	고속철도에서의 대형 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시민안전과	2015	건축물에서의 화재 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경제과	2014	사업장에서 대규모 인적 사고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수록
다중밀집시설 붕괴 대형사고	허가건축과	2015	건축물에서의 붕괴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을 규정
가축질병	축산과	2015	가축 질병 위기상황 발생 시 공주시가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감염병	건강관리과	2015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정보통신	감사정보담당관	2018	유·무선 통신 및 방송서비스 마비 사태로 인해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세부 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 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전 력	경제과	2018	수요급증·설비고장·사회갈등 문제 등에 의해 전력수급 불안으로 국민 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산화·유관기관의 대응절차를 규정

보건의료	보건정책과	2015	보건의료체계의 마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에 대하여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마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
식 용 수	상하수도과	2014	수질오염, 자연재해, 재난 및 테러, 사회적 강등 등으로 인한 식·용수 공급시스템의 파괴 및 마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
육상화물 운송	교통과	2014	육상화물운송 분야 종사자들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화물운송 마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국가기반체계의 최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
초미세먼지	환경보호과	2020	초미세먼지 재난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 발생한 경우 적용할 세부대응 절차 및 제반조치사항 등을 규정
도로터널 사고	도로과	2018	교량·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부 대응 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항공기 사고	교통과	2018	항공기 사고에 대한 위기상황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와 제반조치사항 등을 규정
천연가스	경제과	2019	천연가스의 공급차질로 국민 생활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경우 공주시 산하·유관기관의 대응절차와 조치 사항을 규정
저수지붕괴	건설과	2015	저수지붕괴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풍 수 해	2023. 1. 3.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지 진	2023. 1. 3.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대형화산폭발	2023. 1. 3.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가 목	2023. 1. 3.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조류대발생(녹조)	2023. 1. 25.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산 사 태	2023. 1. 11.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낙 뢰	2023. 1. 4.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한 파	2023. 1. 4.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폭 염	2023. 1. 3.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산 불	2023. 1. 4.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2023. 1. 11.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대규모 수질오염	2023. 1. 1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댐 붕 괴	2023. 1. 4.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고속철도 대형사고	2023. 1. 3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2023. 2. 3.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2023. 1. 1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다중밀집시설 붕괴 대형사고	2023. 1. 1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가축질병	2023. 1. 4.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감 염 병	2023. 1. 4.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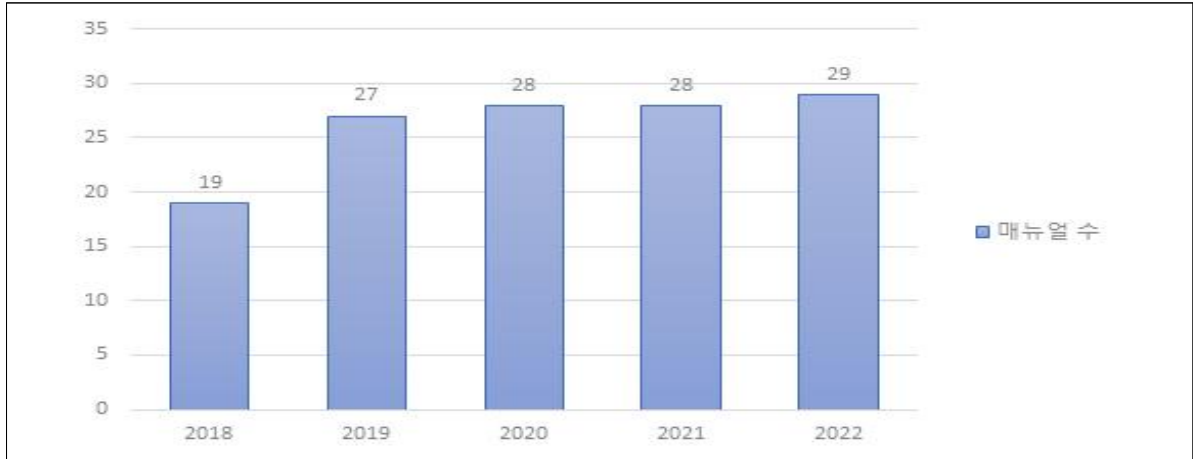
정보통신	2023. 1. 16.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전 력	2023. 1. 13.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보건의료	2023. 1. 3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식 용 수	2023. 1. 4.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육상화물 운송	2023. 2. 2.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초미세먼지	2023. 1. 12.	정부대응체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도로터널 사고	2023. 1. 1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항공기 사고	2023. 1. 3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천연가스	2023. 1. 27.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저수지붕괴	2023. 1. 1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정비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산 불	2022. 10. 31.	안전총남훈련	- 단계별 행동요령 및 임무 점검을 통한 13개 협업 부서별 임무·역할 숙지	
지 진	2022. 4. 15.	지진 대비 훈련	-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변경으로 대응절차 숙지 및 조치 계획 수립 미흡 - 부서 내부 조치사항에 치중, 시민 통제 및 구호 대응 미흡	
풍수해	2022. 4. 7.	풍수해 대비 훈련	- 단계별 행동요령 및 임무 점검을 통한 13개 협업 부서별 임무·역할 숙지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뉴얼 수	19	27	28	28	29



☞ 구체적 내용 설명(증감원인 등)

- 특이사항 없음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등급]

구 분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	종합등급
진단결과	C	D	B	C

◆ 연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등 급	B	미실시	A	미실시	C

☞ 구체적 내용설명

- 2021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미실시로 전년도 비교 불가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공주시 시민안전과(담당자 : 이미래, 전화 : 041-840-864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금고지정 신청 공고

공주시 금고약정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차기 공주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3. 15. ~ 2023. 3. 30.(16일간)

2. 지정방법 : 공개경쟁

3. 약정기간 : 4년 (2024. 1. 1. ~ 2027. 12. 31)

4. 금고의 수 : 단일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5. 신청자격 및 요건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공주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6. 금고의 주요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특별회계, 기금의 수납 및 지급
-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 및 지방채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그 밖에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한 업무

7. 신청절차

가. 사전설명회

- 일 시 : 2023. 3. 21.(화) 14:00
- 장 소 : 시청 세무과(별관1동 2층)
- 주요내용 : 금고지정 신청안내 및 작성요령 설명 등

나. 서류 열람

- 일 시 : 2023. 3. 21. ~ 3. 24.(4일간) 평일 09:00~18:00
- 장 소 : 시청 세무과
- 비치서류
 - 2020~2021년 세입·세출결산서(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 관내 금융기관에서 금고지정을 희망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 요청시 가능한 자료 제공 및 안내

다.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3. 3. 29. ~ 3. 30.(2일간) 근무시간 내(09:00~18:00)
- 장 소 : 시청 세무과
- 제출부수 : 12부(원본 1, 사본 11) ※요약서 12부 포함
- 제출서류 : 평가항목 요구내용 관련자료, 증명 및 근거자료 등
 -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정관, 등기부등본, 그 밖에 우리 시 금고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
- ※ 신청서(제안서) 12부를 확인 후 밀봉예정이므로 방문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 받은 자의 사용인감지참
(각 1부는 평가서 요약 등 제반사항 확인 후 비밀보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별표 1], [별표 2]

9. 제안서류 심사

-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공주시에서 정한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공주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시자료와 비교하여 비공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
- 市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청문)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이에 응하여야 함(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금융기관 책임)
- ☞ 면접(청문)심사 시 통보 가능한 연락처 및 담당자 지정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확인 및 보충자료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금고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 평가 금융기관 중 1위인 금융기관을 단일금고로 지정
- ※ 다만,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함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약정 체결, 선정된 후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금융기관의 자부담으로 함

11.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市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 하도록 함
- 각종 금융 전산시설(OCR센터 등)의 경우 2024. 1. 1.부터 실제로 정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시한 정상가동 기간을 어길 경우 소정의 지연배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짐
- 市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귀책사유로 손해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협력사업비 납부

- 市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는 매년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를 해당연도 3. 31.까지 공주시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함
- 매년 납부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약정한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늦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 해당금융기관의 일반자금 연체이율을 적용 해당일수 만큼 산출한 변상금을 공주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13. 그 밖의 사항

- 제안서는 “공주시 금고 지정 신청 안내” (2023. 3. 21. 14:00 사전 설명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함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은 무효)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내용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일부 항목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금고 선정 시 제안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말일 까지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를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공주시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함. 이 경우 최초 공고기간중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재공고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市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출한 제안서의 주요 내용과 실행 이행각서를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 한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세부 평가 항목 및 제안서 제출서식 작성요령은 설명회 시 배포할 계획 임.
- 그 밖에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름.

14. 문 의 : 공주시청 세무과 (☎ 041-840-8331)

[별표 1]

공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	
	- 국외 평가기관(4)	4	
	- 국내 평가기관(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 비율(안정성, 6)	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	6	
	-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 5)	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	2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로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수	8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만으로 평가			

[별표 2]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과 적용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간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고 10%에서 최소 4%의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평가기준(8점)

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한다.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안전성, 2점)

2)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르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주요항목 경영지표 평가항목 중 자기자본이익율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미대상
이므로 순위에 따라 배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점)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자동화코너 분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최근 일정기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방안, 파업 등 각종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3점)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과 각종 회계별 세입금의 적정처리 및 자금이체일 준수 여부와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 능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2점)

현금출연금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지 서식】 (개정 2019.10.1.)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 (제5조 관련)

1. 금융기관의 대내 ·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신용평가 기관명	평가 기준일	평가 등급	비 고

2)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평가 기준일	평가 등급	비 고

※ 신용평가는 제안서 접수 마감한 날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평가사항 모두 기재
 ○ 국내 신용평가는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에 한정한다.(각 평가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 평가할 분류표 첨부)
 ○ 국외 신용평가기관은 Moody's, S&P, Fitch의 평가에 한정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단위: %)

항 목	비 율			산 출 근 거
	평균	전년도말	현년도상반기	
총자본 비율				(BIS총자본/위험가중자산)*100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 분류여신/총여신자산)*100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액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본)*100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고유동성자산보유규모/향후30일간순현금유출액)*100

※ 항목별 비율에 대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관련서류 첨부)
 ○ 소수 둘째자리까지 작성(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시(市)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단위: %)

구 분		기 간 별			비 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정 기 예 금	현행금리				
	제안금리				

※ 항목별 비율에 대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관련서류 첨부)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단위: %)

구 분	금 리	비 고
보통예금 기준금리(현행)		
공금예금 금리(제안)		

※ 공금예금 = 공공기관 자금의 일상 예치예금(수입금출납원 공금예금 등)

※ 시중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표 첨부(소수 둘째자리까지 작성)

○ 현행금리는 제안서 제출월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市)에 대한 대출금리

(단위: %)

구 분	대출금리	비 고
지 방 채 (10억 기준)		
일시차입금 (10억, 3개월 기준)		

※ 소수 둘째자리까지 작성하고 금리는 제안서 제출월을 기준으로 한다.

○ 그 밖에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단위: %)

구 분	금 리	비 고
수시입출금식 예금		

※ 기간에 따라 적용금리가 다를 경우 구분하여 표시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1) 영업점 및 직원 현황

구분	관내 영업점 현황				비 고
	영업점명	소재지	직원수	ATM기(대수)	
계					

※ 관내 영업점 현황은 공주시 관내 본점·지점·영업점·출장소를 포함하며, 무인점포 및 ATM기 설치 대수를 말한다.(제안서 제출 전월 말 기준으로 작성). 단, 「관내지점의 수」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수납건수	수납금액	비 고
계			
년			
년			

※ 최근 2년간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점포의 지방세 수납실적(소명자료 첨부)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1) 공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

2) 금고운영 시 세입금 수납 관련 시민 편의제도 시행계획

※ 실천 가능한 사항만 기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1)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

※ 별도작성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1) 금고관리업무 수행 경험

구 분	취급 금고 수				비 고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밖의	
계					
자치단체					
공공기관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금고업무 수행경험을 각 기관별로 세부내역 첨부

※ 금고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에서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직접 수행한 실적

예시)

기 관 명	회 계 명	기 간	비 고
자치단체, 공공기관 순으로 작성	○ 일반·특별회계 동시 취급 ○ 일반회계만 취급 ○ 특별회계만 취급	예시) 2020.1.1~2023.12.31 (4년)	

2) 금고업무수행을 위한 점포 설치,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1)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1) OCR프로그램 판독기 등 전산장비프로그램 설치 현황, 설치 계획 및 운영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市)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지원일자)	분야별	관련내용 등	수혜대상 (기관,단체,개인 등)	지원금액	지원목적 및 효과
계					

※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한 기여사업 및 실업 감소(채용, 취업알선 등)등에 동참한 최근 3년간 실적(증빙서류 첨부)

나. 시(市)와 협력사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출연연도	출연금액	비고
계			
현금출연금			

※ 년도별 현금출연 계획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주의사항

- 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고, 항목 순서와 취지에 따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작성

2. 작성방법

-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성자(기관명)에 날인하여야 함
- 용지규격은 A4종, 글씨는 한글(휴먼명조) 글씨크기는 14포인트, 분량은 제한 없음
- 제안서는 페이지별 일련번호를 기재
- 제안서 작성 순서는 일반현황 및 평가자료 항목 순서별로 작성
- 증명서는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자료를 최우선 함
- 제안서의 표지는 (붙임1)과 같이 작성
- 금고지정 신청서(붙임 2)는 공문에 첨부하여 별도 제출하고 금융기관(법인)의 정식명칭을 사용하여 신청서 작성
- 제안서의 신뢰성 입증을 위하여 각서(붙임 3) 및 사용인감확인서(붙임 4)를 공문에 첨부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 요약을 간략히 작성하여 별도 제출
- 평가항목별 실적과 계획은 제시된 작성연도, 기준시기 등이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견출지 부착하여 구분
- 내용은 가급적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하고, 서식을 제시한 것은 서식대로 작성하되 주석은 해당서식의 하단에 기재하고, 첨부 자료는 색인표를 붙여 항목순서대로 편철하여 부속자료로 제출
- 소숫점은 둘째자리까지 표기(세째자리에서 반올림)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 증명서류 등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한글번역본 첨부
- 증명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필 과 사용인감 날인

붙임 1 : 제안서 표지

공주시 금고지정 제안서

○ ○ ○ (금융기관명)

공주시 금고지정 신청서

① 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소재지	⑥ 본부		전화
	⑦ 지역본부 사무소		전화

공주시 금고지정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주시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2023년 월 일

신청인 ○ ○ ○ 은행

금융기관장 ○ ○ ○ (인)

공주시장 귀하

각 서

- 1. 공주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의·평가지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한다.
- 2. 공주시 금고지정 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3. 공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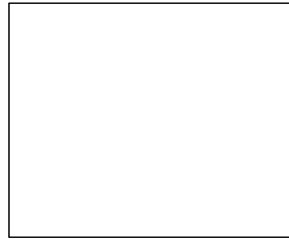
2023년 월 일

○ ○ ○ 은행

금융기관장 ○ ○ ○ (인)

공주시장 귀하

사 용 인 감 확 인 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지점장·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 ○ ○ 은행

금융기관장 ○ ○ ○ (인)

공주시장 귀하

붙 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공주시 응진동 219-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호선)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응진동 21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호선) 사업
 - 사업 명 칭 : 공주시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사업
 - 사업 내 용 :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사업으로 도심외곽 취약지 낙후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 사업면적 : 30,58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2	2	15	보조 간선 도로	2,412	중로2-21	대로2-6	일반 도로	웅진동	1977.02.17.	
시행	중로	2	2	15	보조 간선 도로	1,000	중로2-21	웅진동 158-4	일반 도로	웅진동	-	금회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공주시장 (도로과장)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 2024. 12. 31.

6. 공람기간 : 2023. 03. 15. ~ 2023. 03. 29. (14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로과, 웅진동사무소

8.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3. 03. 29. 18:00
- 제출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로과(☎041-840-8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구분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와 내용	
1	응진동	92-2	92-5	답	473	5	공주시 산성동 131	김명순				
			92-6	답	28	28	공주시 산성동 131	김명순				
2	응진동	94-2	94-10	답	2,711	8	공주시 신관동 1-22 새뜰현대아파트301/401	유재금				공유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83, 210동1601호(관저동,신선마을아파트)	유혜정				공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 510동 103호 (상현동,서원마을5단지금호베스트빌)	유정석				공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 510동 103호 (상현동,서원마을5단지금호베스트빌)	안은정				공유
							반죽동 245-1	정혜경				공유
			94-11	답	49	49	공주시 신관동 1-22 새뜰현대아파트301/401	유재금				공유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83, 210동1601호(관저동,신선마을아파트)	유혜정				공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 510동 103호 (상현동,서원마을5단지금호베스트빌)	유정석				공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 510동 103호 (상현동,서원마을5단지금호베스트빌)	안은정				공유
							반죽동 245-1	정혜경				공유
3	응진동	93	93-1	답	1,504	912	서울 마포구 공덕동 175-172	김영남				
4	응진동	219-1		답	1,339	1,339	인천시 남구 남주길 130-9(주안동)	정승희	공주시 금성동 21-5	공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5	응진동	95	95-5	대	653	4	대전시 서구 월평동 1198, 401	김장덕				
6	응진동	739	739	구	45,806	198	농림축산식품부	국				
			739-21	구	144	144	농림축산식품부	국				
			739-23	구	1,208	1,208	농림축산식품부	국				
			739-25	구	408	408	농림축산식품부	국				
			739-27	구	344	344	농림축산식품부	국				
			739-28	구	45,806	145	농림축산식품부	국				
			739-29	구	999	999	농림축산식품부	국				
7	응진동	106-2	106-5	전	1,623	724	공주시 이인면 군안길 24-36	송인덕	공주시 이인면 군안길 24-36	송연호	근저당	
8	응진동	106-4		전	113	113	대전시 동구 동구청로35, 213/101(대성,은어송마을2단지)	이화순				
9	응진동	104-3	104-4	전	294	5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6길 24, 205호	김면	공주시 중동 147-102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화성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10	응진동	741		도	426	180	국토교통부	국				
11	응진	103	103-	전	284	67	공주시 반죽동 35	성대유				

	양		1																
12	응진동	102-1		천	31	31		공주시											
13	응진동	102		임	192	192	공주시 교동 137	곽경선											
14	응진동	102-2		천	158	158		공주시											
15	응진동	101-1		전	313	313	공주시 중학동 135-7	이창우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86 아남아파트5/301	권병창(이창우 지분 채권)	채권자(경매개시)	공유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아파트 305-1503	이복신				공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28-1 경남아파트 7-105	이복남				공유							
							중동 367-1	이민우				공유							
16	응진동	101		전	103	103	공주시 중학동 135-7	이창우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86 아남아파트5/301	권병창(이창우 지분 채권)	채권자(경매개시)	공유							
											공주시(이창우 지분)	압류	공유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아파트 305-1503	이복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28-1 경남아파트 7-105	이복남				공유							
							중동 367-1	이민우				공유							
17	응진동	112-1		천	110	110		공주시											
18	응진동	112	112-2	대	883	480	천안시 서북구 변영로 306-15, 106/1301(백석동,브라운스톤)	김미경											
			112-3	대	175	175	천안시 서북구 변영로 306-15, 106/1301(백석동,브라운스톤)	김미경											
19	응진동	114	114-2	전	1,656	1,047	공주시 교동 221-3	장연순											
			114-3	전	139	139	공주시 교동 221-3	장연순											
20	응진동	114-1	114-4	천	348	129		공주시											
			114-5	천	172	172		공주시											
21	응진동	143-3	143-9	천	425	54		공주시											
			143-10	천	29	29		공주시											
22	응진동	143	143-4	답	1,935	993	대전시 대덕구 동춘당로 160,102/1103(법동,삼익소월아파트)	김일동	대전시 대덕구 한밭대로1149번길 15-16(중리동)	회덕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3	응진동	143-2	143-2	임	48	33	공주시 교동 152	안무성											
24	응진동	144-1		유	292	292		공주시											
25	응진동	144-5	144-10	유	557	4		공주시											
26	응진동	144-4	144-8	유	278	238		공주시											
27	응진동	92-1		도	1,028	335		공주시											
28	응진동	250-3	250-9	답	753	34	서울 마포구 공덕동 175-172	김영남											
29	응진동	92	92-4	답	1,326	389	공주시 산성동 131	김명순											
30	응진동	92-3		도	271	271		공주시											
31	응진동	219-2	219-5	답	1,934	729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496	우형식	공주시 신관동 601-8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32	응진동	737-12		도	4,363	27	국토교통부	국											

33	응진동	740		도	426	1	국토교통부	국				
34	응진동	107-1	107-3	답	1,134	814	공주시 신관동 1-22 새뜰현대아파트301/401	유재금				
35	응진동	107-2	107-4	답	1,355	248	공주시 반죽동 245-1	정해경				공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 510동 103호 (상현동,서원마을5단지금호베스트빌)	유정석				공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 510동 103호 (상현동,서원마을5단지금호베스트빌)	안은정				공유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83, 210동1601호(관저동,신선마을아파트)	유혜정				공유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158, 703동 403호 (아름동,범지기마을7단지)	유기선				공유
36	응진동	108-1	108-3	답	1,180	767	공주시 반죽동 60	최태연				
			108-4	답	72	72	공주시 반죽동 60	최태연				
37	응진동	109	109	전	436	425	공주시 고상아리1길 26(중학동)	김두식				
			109-1	전	11	11	공주시 고상아리1길 26(중학동)	김두식				
38	응진동	108-2	108-5	답	506	207		공주시				
39	응진동	738		도	893	361	국토교통부	국				
40	응진동	110-2	110-16	대	497	11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14, 101/1803(신대방동,경남교수아파트)	이면학				
			110-14	대	174	174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14, 101/1803(신대방동,경남교수아파트)	이면학				
			110-15	대	1	1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14, 101/1803(신대방동,경남교수아파트)	이면학				
41	응진동	110-3	110-18	도	74	37	공주시 응진동 94	이성옥	공주시 교동3-108	윤진수	가압류	
			110-17	도	2	2	공주시 응진동 94	이성옥	공주시 교동3-108	윤진수	가압류	
42	응진동	110-5	110-20	답	1,712	416	공주시 관골1길 7, 103/2003(신관동,코아루센트럴파크)	신은진	공주시 변영로1로170	삼성새마을금고	근저당, 지상권	
			110-21	답	112	112	공주시 관골1길 7, 103/2003(신관동,코아루센트럴파크)	신은진	공주시 변영로1로170	삼성새마을금고	근저당, 지상권	
43	응진동	110-8		도	9	9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139	송상규				
44	응진동	110-7	110-22	도	206	50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139	송상규				
45	응진동	110-10	110-23	대	692	19	공주시 응진동 110-10	장권순				
46	응진동	110-13		대	10	10		공주시				
47	응진동	110-12	110-24	대	102	71		공주시				
48	응진동	110-11		도	23	23		공주시				
49	응진동	138-1	138-2	천	471	466		공주시				
50	응진동	141-1	141-2	전	162	19		공주시				
51	응진동	742		도	605	328	국토교통부	국				
52	응진동	138		유	154	154		공주시				
53	응진동	142	142-1	답	516	235	대전시 대덕구 동촌동로 160,102/1103(법동,삼익소월아파트)	김일동	대전시 대덕구 한밭대로1149번길 15-16(중리동)	회덕농협조합	근저당	
54	응진동	143-1	143-6	임	1,680	705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305/1503	이복신				공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28-1 경남아파트 7-105	이복남				공유

							중동 367-1	이민우				공유
55	응진동	산31-1	143-13	입	95.113	1.294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305/1503	이복신				공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28-1 경남아파트 7-105	이복남				공유
							중동 367-1	이민우				공유
56	응진동	산30	143-12	입	16.513	410	공주시 교동 152	안무성				
57	응진동	산29-9	144-12	입	21.619	3.5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엘지빌리지아파트 301/801	이경석				
58	응진동	144-6	144-11	전	302	157		공주시				
59	응진동	144-2		전	505	505		공주시				
60	응진동	146-5	146-7	답	121	73	공주시 시어골1길 90-2(응진동)	김종섭				
61	응진동	146-2	146-6	답	2.294	273	공주시 시어골2길 19(응진동)	김일중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층정로1가)	농협은 행주식 회사	근저당	
62	응진동	146-3		답	15	15		공주시				
63	응진동	158-1	158-5	전	152	5	공주시 시어골2길 19(응진동)	김일중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층정로1가)	농협은 행주식 회사	근저당	
64	응진동	158-3	158-6	전	592	47	공주시 시어골2길 19(응진동)	김일중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층정로1가)	농협은 행주식 회사	근저당	
			158-7	전	152	152	공주시 시어골2길 19(응진동)	김일중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층정로1가)	농협은 행주식 회사	근저당	
65	응진동	158-2		전	377	374	공주시 시어골2길 19(응진동)	김일중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층정로1가)	농협은 행주식 회사	근저당	
66	응진동	745		도	1.964	116	국토교통부	국				
67	응진동	144-3	144-7	입	100	96		공주시				
68	응진동	744		도	1.273	293	국토교통부	국				
69	응진동	146-4		답	63	63		공주시				
70	응진동	156-3	156-17	전	139	20		공주시				
71	응진동	156-2	156-14	답	2.016	1.366	공주시 봉황동 242	심홍식				
			156-16	답	16	16	공주시 봉황동 242	심홍식				
72	응진동	156-10	156-10	천	501	488		공주시				
			156-20	천	13	13		공주시				
73	응진동	158-4	158-8	전	483	439	충청남도 공주시 시어골2길 19(응진동)	김일중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층정로1가)(공주시지부)	농협은 행주식 회사	근저당	
74	응진동	산23-1	101-2	입	57.718	204	대전시 선화동 32	재단법 인중청 남도향 교재단				
			101-3	입	626	626	대전시 선화동 32	재단법 인중청 남도향 교재단				
			101-4	입	403	403	대전시 선화동 32	재단법 인중청 남도향 교재단				
75	응진동	113	113-1	대	264	12	공주시 중동 367-1	이민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86 아남아파트 5/301	권병창 이창우 지분 채권	경매개 시결정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1 경남아파트 7/105	이복남				

			113-2	대	95	95	공주시 증동 367-1	이민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86 아남아파트 5/301	권병창 이창우 지분 채권	경매 개 시 결 정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1 경남아파트 7/105	이복남				
76	응진동	산24-1	112-4	임	54,446	173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3-214	문형진				공유
							공주시 반죽동 150-10	문형권				공유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24-8	문일승				공유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67-12	문준석				공유
			112-5	임	60	60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3-214	문형진				공유
							공주시 반죽동 150-10	문형권				공유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24-8	문일승				공유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67-12	문준석				공유
			112-6	임	77	77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3-214	문형진				공유
							공주시 반죽동 150-10	문형권				공유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24-8	문일승				공유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267-12	문준석				공유
77	응진동	156-4	156-18	답	1,441	54	공주시 응진동 114	김현태				
78	응진동	156-1	156-13	유	90	8	공주시 시어골2길 19(응진동)	김일중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농협은 행주식 회사	근저당	
79	응진동	156-6	156-19	유	39	1		공주시				
소 계					338,016	30,588						

공주시 공고 제2023-568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사시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등 (안 제1조 ~ 제4조)
 - 공주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5항에 명시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안 제6조)
 -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7조 ~ 제16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등 관련 주요정책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위원회의 운영 규정, 심의해야 할 안전에 대하여 명시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17조)

- 안전관리계획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 관내 취급 화학물질, 주민대피, 예방관리계획서 관련 내용 공개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안 제19조)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에 대한 정보를 고지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안 제20조)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배출저감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화학안전 지킴이(안 제21조)

- 화학사고 예방 및 적절한 감시, 홍보를 위한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기간 : 2023. 3. 15. ~ 2023. 4. 4.(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4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환경대응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35
- 전화번호 : 041-840-8514 FAX : 041-840-2329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041-840-8514)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35)

- FAX : 041-840-2329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주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계획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5.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 관할지역의 소방, 경찰 등(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보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을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주시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취급물질과 방재약품 현황
2. 화학물질의 주요 운송 경로
3. 화학사고를 대비한 기업체 및 시민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4. 화학사고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5. 화학사고의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화학사고의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8. 화학사고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점검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1. 배출저감계획의 공개와 이행점검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재난·안전 대응 업무 담당 부서장

다. 소방서와 경찰서의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학·환경·보건·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나.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요구 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주시 화학안전 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사항

제18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지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안전원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 ① 시장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제21조(화학안전 지킴이) ① 시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과 적절한 감시 및 홍보를 위하여 화학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화학안전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
2. 화학물질 관련 주민 민원 발생 지역 등에 대한 화학사고 및 배출 위험 감시활동
3.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 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사업을 환경·안전교육·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3 - 569호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간결하며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목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민간에서 상호로 사용중인 ‘공주푸드’에 대한 상표권 분쟁 방지 및 용어혼용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주시 로컬푸드에 대한 명칭을 특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 “공주푸드”를 “공주시 로컬푸드”로 변경
 -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로 변경
- 자체 인증제도 운영 세부사항 제정 근거 마련
- 공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위탁 주체 범위 확장

3. 입법예고 기간 : 2023. 03. 15. ~ 2023. 04. 05.(21일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03. 15. ~ 2023. 04. 05.(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공주시청 농식품유통과)
- 연락처 : 041-840-8709, FAX : 041-840-3764

5. 기 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팀 (☎ 041-840-8709)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32528)

ㄴ FAX : 041-840-3764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주푸드”란”을 ““공주시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란”을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란”으로, “공주푸드가”를 “로컬푸드가”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주푸드”를 “로컬푸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공주푸드”를 각각 “로컬푸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공주푸드를”을 “로컬푸드를”로, “공주푸드의”를 “로컬푸드의”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공주푸드 지원 심의위원회”를 “공주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로, “공주푸드 지원”을 “로컬푸드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공주푸드”를 “로컬푸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공주푸드”를 “로컬푸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공주푸드”를 각각 “로컬푸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주푸드 생산)”을 “(로컬푸드 생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주푸드”를 각각 “로컬푸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주푸드 가공)”을 “(로컬푸드 가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공주푸드”를 각각 “로컬푸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공주푸드 소비·유통)”을 “(로컬푸드 소비·유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주푸드 생산참여자”를 “로컬푸드 생산참여자”로, “공주푸드 유통·소비”를 “로컬푸드 유통·소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주푸드 식품유통”을 “로컬푸드 식품유통”으로, “공주푸드 이용촉진”을 “로컬푸드 이용촉진”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주푸드의 인증)”을 “(로컬푸드의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주푸드의”를 “로컬푸드의”로, “공주푸드에”를 “로컬푸드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따”를 “규칙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공주푸드”를 “로컬푸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주푸드”를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로컬푸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공주푸드”를 “로컬푸드”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공주푸드”를 “로컬푸드”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를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주푸드를”을 “로컬푸드를”

로,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비영리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39조 중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입체도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7.

공 주 시 장

1. 고 시 일: 2023. 3. 7.(화)
2. 효력발생일: 2023. 3. 7.(화).
3. 고시방법: 공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고시내용: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 **입체도로 도로명 : 오인고가도로(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소재)**
5.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절차

도로구간 설정 및 예비도로명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 의견 제출기간 경과한 날부터 ⇒ 30일 이내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 개발사업자의 신청 또는 직권		14일 이상		주소정보 위원회 개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부여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41-840-8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도로명 조서 및 도면 각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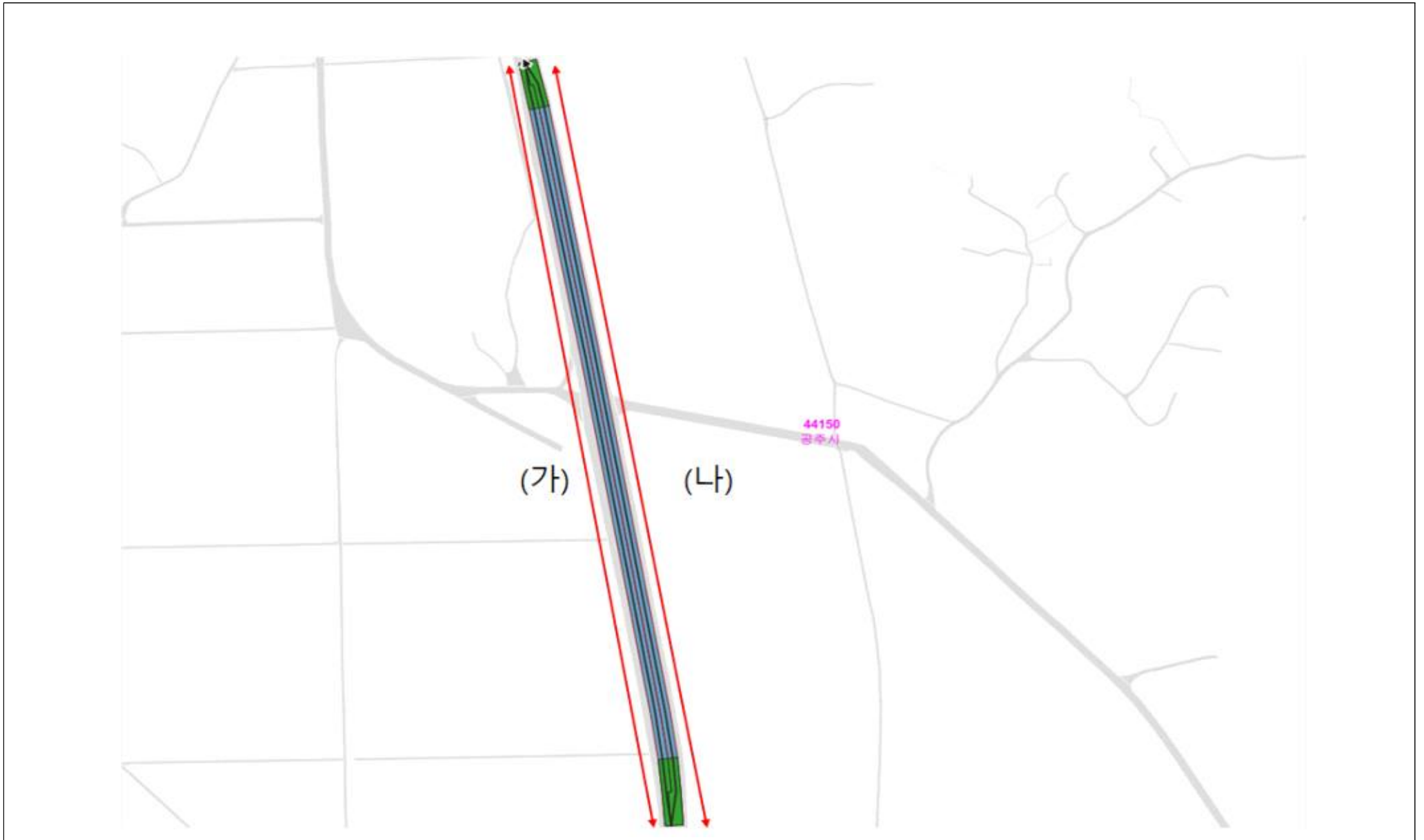
붙 임 지자체입체도로 조서(오인육교)

② 세부 관리 번호	③기본현황			⑩시군구 의견		⑭시도 검토의견			
	④ 시도/ 시군구	현행		⑪도로명	⑬도로명 부여사유 ※구간변경 사유	⑮ 도로명	⑯도로명 부여사유	⑰ 검토의견	⑱ 시장등 의견 (동의여부)
		⑤시작지점 (기초번호)	⑦총연장(m)						
전체 구간 (가) ※하행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45-11 차령로 2613 (1)	752.4m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44-17 차령로 2689 (75)	-						
			-						
전체 구간 (나) ※상행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45-11 차령로 2614 (2)	755.3m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44-17 차령로 2690 (76)	-						
			-						
(가)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45-11 차령로 2613 (1)	752.4m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44-17 차령로 2689 (75)	-						
			-						
(나)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45-11 차령로 2614 (2)	755.3m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44-17 차령로 2690 (7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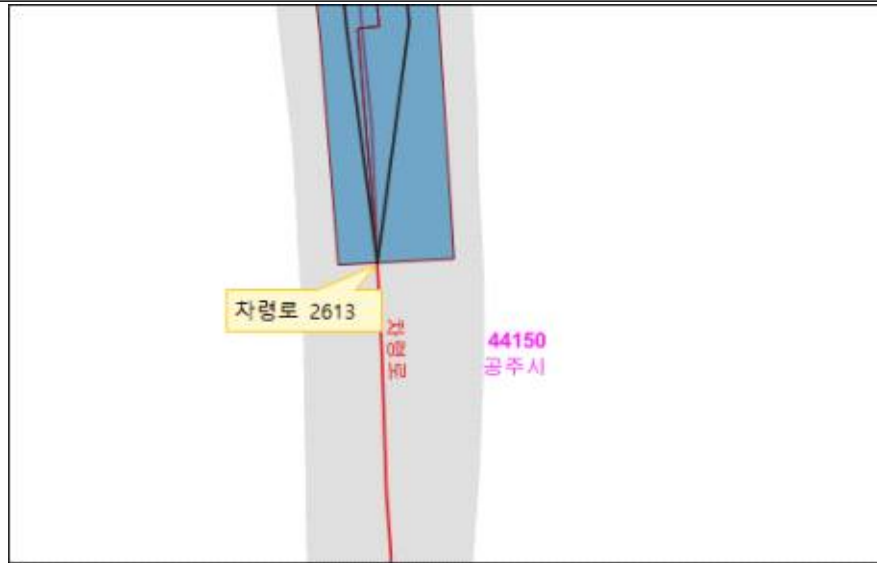
【 현황 도면 1 】 ※ 수급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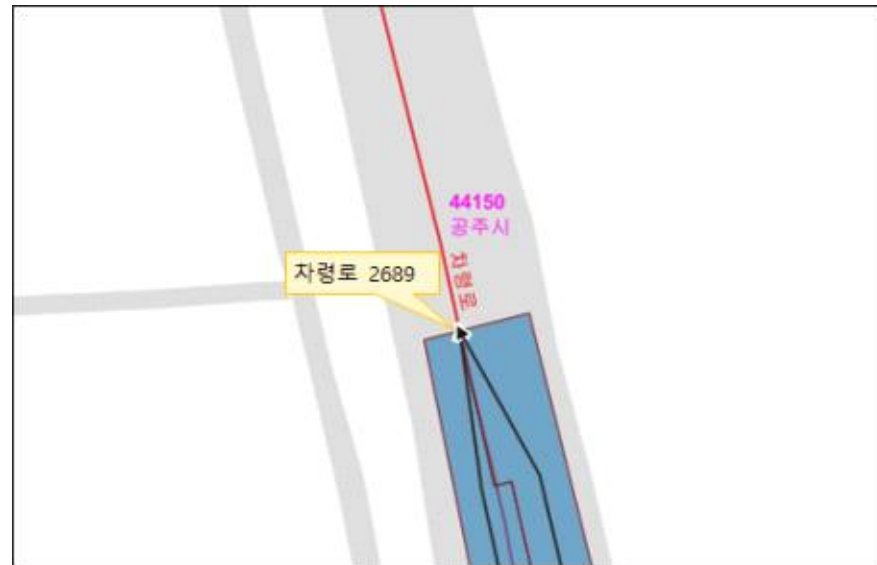
【 현황 도면 2 】 ※ 전체현황



【 현황 도면 3 】 ※ 시작지점, 끝지점



(가)시작지점



(가)끝지점

【 현황 도면 4 】 ※ 시작지점, 끝지점



(나)시작지점



(나)끝지점

유구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23-11번지 일원 『유구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유구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농촌지역에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촌 건설 도모

3. 사업비 : 2,071백만원(국비 1,314, 도비 227, 시비 530)

4. 주요 사업내용

- 안전·위생 확보 : 보행안전길 정비, 재래식화장실 정비, 혐오시설 정비
- 노후주택정비 : 슬레이트지붕 개량, 노후 집수리, 빈집 철거
- 기초생활 인프라 : 주민운동공간 조성
- 경관시설정비 : 노후담장정비, 공원조성
- 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 어르신 행복얼굴담기, 고령자 건강교실 등

5.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사업대행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6.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7.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기반팀(041-840-86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 지원을 통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108조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곡면 신영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사곡면 신영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목적 : 낙후된 농촌지역에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도모
3. 사업내용
 - 가. 위 치 : 공주시 사곡면 신영2리 일원
 - 나. 사 업 비 : 1,804백만원(국비1,341 도비139 시비324)
 - 다.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라. 사업개요

- 안전·위생 확보 :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재래식 화장실 철거, 축사 차폐시설 설치
- 생활인프라 개선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정비, 다목적광장 조성
- 주택정비 :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집수리
- 경관환경개선 : 노후담장 개량, 폐축사 철거
- 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 이동목욕서비스, 집수리 교육, 리더양성 교육 등

4. 사업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5.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6. 기타 사항 : 관계서류 열람 및 문의(공주시청 지역활력과 ☎ 041-840-8247)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변경 및 폐지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15.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봉면 북골냉정길 63-12 외 28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22)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4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3.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영정리 410-10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북골냉정길 63-12	2023 0315	신규	2010 0202	두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두 마을의 자연 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북골냉정길로 부여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327-4	충청남도 공주시 선절길 (신기동) 34-27	2023 03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260-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912-7	2023 0315	신규	2010 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 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4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동 81-22	충청남도 공주시 장척로 (동현동) 166-24	2023 0315	신규	2010 0112	조선시대 장척면이었다가 1914년 장기면으로 변경되었고, 장기면의 역사성과 구도로인 점을 고려하여 장척로로 부여	
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323-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구역말길 48-21	2023 0315	신규	2010 0112	구활원 서쪽에 있는 빙정산 구석에 자리한 큰 마을이라 하여 구역말길로 부여	
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456-2, 274-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구역말길 7	2023 0315	신규	2010 0112	구활원 서쪽에 있는 빙정산 구석에 자리한 큰 마을이라 하여 구역말길로 부여	
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북룡리 산3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쌍계길 76	2023 0315	신규	2010 0112	닭이 알을 품고있는 명당자리가 있다고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8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262-17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단평길 148-13	2023 0315	신규	2010 0112	조선시대 초 이마을에 단평역이 있었다 하여 단평길로 부여	
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46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오미2길 14-7	2023 0315	신규	2010 0112	마을 뒷산의 형상이 자라모양이고 마을을 꼬리로 감싸는 형국이라서 오미라고 불리므로 오미길로 부여	
1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163, 16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4	2023 0315	신규	2010 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1	충청남도 공주시 오곡동 250	충청남도 공주시 고분티로 (오곡동) 604-5	2023 0315	신규	2010 0112	발양 ~ 반송을 지나는 길의 고개 이름을 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 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 주소 전환 계획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4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 119	2023 0315	신규	2010 0112	상신과 하신을 관통하는 도로이며 상신의 상자와 하신의 하자를 활용하여 상하신길로 부여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동원리 94-1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화장마을길 99-52	2023 0315	신규	2019 0202	꽃이 많이 피는 마을이었다 하여 화장마을 길로 부여	
1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949-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길 484-42	2023 0315	신규	2010 0112	옥성리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활용하여 부여	
1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30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허수아비길 158	2023 0315	신규	2010 0112	지역특성 반영	
16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233-78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국제길 45-18	2023 03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449-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길 195-3	2023 0315	신규	2010 0112	유계리를 대표하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유계길로 부여	
18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776-9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안말길 52	2023 03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활용후 다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19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776-6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안말길 54	2023 03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활용후 다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20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776-5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안말길 56-4	2023 03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활용후 다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21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776-4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안말길 56-2	2023 03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활용후 다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2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776-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안말길 56-8	2023 03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활용후 다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변경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동원리 437-1, 437-6, 438-1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동원리 437-1, 437-6, 438-1, 437-7, 436-5, 437-11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만천길 195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만천길 195	2023. 0308	증축에 의한 관련 지번 추가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700-6, 700-1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700-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입동로 109-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입동로 109-3	2023 0309	건축물대장 변경에 의한 관련지번 정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영정리 158-2, 평소리 67-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영정리 158-2, 평소리 67-3, 61-1, 62, 64-2, 63-1	충청남도 공주시 당진영덕고속도로 53	충청남도 공주시 당진영덕고속도로 53	2023. 0310	증축에 의한 관련 지번 추가	
4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평소리 51, 45-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평소리 51, 45-3, 45-1, 45-4	충청남도 공주시 당진영덕고속도로 54	충청남도 공주시 당진영덕고속도로 54	2023. 0310	증축에 의한 관련 지번 추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 지 고 시 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84-23, 384-2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남방2길 25	2023. 03.02	2023 일제조사
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20-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수춘중앙길 10-3	2023. 03.02	2023 일제조사
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3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숫절길 80-30	2023. 03.02	2023 일제조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도26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3. 15.

공 주 시 장

1. 도로구역의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km)
당 초	시도	37호	신관~유계	공주시 신관동 금흥동 의당면 일원	186,547	신관동 478-25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산14-8	-	8.0
변 경	시도	제26호	청룡~유계	공주시 금흥동 의당면 일원	146,476	의당면 청룡리 912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산14-8	-	6.4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시도26호선의 노선(변경)고시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계재생략)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공주시 도로과 도로계획팀(☎041-840-8911)

다. 도로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계재생략